

# 1. 들어가는 글

오늘날 세계 여러 나라는 문화를 전략적 산업으로 인정하여 많은 정책들을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문화산업의 시대'를 맞아서 우리 고유의 문화적 가치를 지닌 전통공예는 국제적 경쟁에 유리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으며, 문화산업의 시대인 21C에 걸 맞는 요소들을 갖추고 있다. 전통공예는 기술이면서 문화적 가치를 지니고 있어 고부가가치의 잠재력을 지니며, 이를 통해 고유의 국가이미지 생성 및 제고에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전통공예품은 조상의 숨결과 지혜, 혼을 담은 명품이다. 이런 전통공예품을 보존하는데 소홀히 한다면, 아름다운 우리 문화의 맥이 끊어지는 것은 시간문제일 것이다.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세계 문화유산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는 것도 상상할 수 없게 된다.

특히 산업경쟁력을 갖춘 '전통공예의 부활'은 고부가가치 창출, 무역수지 증대라는 범국가적인 이익과 함께 전통공예에 종사하고 있는 최고의 명장들에게 생계의 활로를, 국민들에게는 우리 고유 전통의 맥을 향유할 수 있게끔 해준다. 이미 일본, 중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 외국에서는 전통공예를 비롯한 고유의 문화상품을 개발하는데 각종 지원정책과 근거법령, 지원단체를 마련하고 있다. 문화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수출증대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대한민국 전통공예는 부활은커녕 그 빛을 잃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전통공예품 생산의 주체인 명장들의 생활은 열악하기 그지없고, 판로는 막혀있고, 수련생과 제자는 생계를 위해 공방을 떠날 수밖에 없는 게 오늘날 우리 전통공예의 슬픈 현실이다.

## 최고의 명장들이 비닐하우스에?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라고 외치던 목소리는 다 어디로 갔는가. 대한민국의 얼굴이자 민족문화의 꽃인 전통공예의 맥이 끊길 처지에 놓여있다. 열악한 환경, 지친 심신, 턱없는 지원금 등 명장의 길은 가난하고 좁다. 제자나 수련생도 허드렛일을 하며 부족한 생계비를 벌고 있다. 쓸쓸한 공방에서 빚어내는 전통공예품은 민족문화의 자부심이나 정체성은 고사하고 생계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 예술 혼을 담은 전통공예품을 빚어내기엔 너무나 좁고 배고픈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한국적이고 가장 세계적인 ‘명품’생산은 어불성설에 가깝다. 실제 전통공예품 생산의 현장은 처참하다. 변변한 작업실조차 없이 고단한 삶을 견디고 있는 몇몇 명장들의 인터뷰 내용은 그래서 더욱 애처롭다.

배고픈 한국 명장을 만나다...



중요무형문화재 제117호 한지장 류행영씨(75세)

“배고파, 졸기도 하고. 먹고 살기 힘들어.

돈을 버는 것은 꿈도 못 꾸고 밥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거지.

전통적으로 만든 우리 한지를 찾는 사람이 적어.

세계 최고의 종이인데... 문 닫게 생겼어.

(제가 가진 기술을) 가르치고 죽어야지 그냥 죽을 수는 없고...

정부에서 힘을 써주지 않으면 우리 전통한지의 맥은 끊기는 거야.”



한지장 류행영씨의 경기도 용인시 소재 공방 ‘고유한지연구소’

: 낡은 비닐하우스 가건물에 문화재 지정 명패가 황량하다.



한지장 류행영씨의 공방 측면  
: 최고 명장의 공방이라고 하기에 너무나 초라하다

고유 전통문화인 한지 제작의 맥을 잇는 데 평생을 바친 류행영(75)씨. 국내 유일의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 117호 ‘한지장’이자 노동부 지정 ‘전승기능자’이다. 그러나 비닐하우스 작업장은 희미한 형광등, 찢어진 창문, 힘없이 돌아가는 선풍기 바람 속에 닳나무 껍질 등 한지 재료가 널브러져 있을 정도로 열악하다.

최근 류씨는 다리도 불편해지고 눈까지 침침하다. 공방인 ‘고유한지연구소’마저 용인시 도시개발사업 구역에 포함돼 조만간 헐릴 위기에 처하게 되니 류씨는 밤잠조차 설치고 있다. 공방 이전을 관계기관에 의뢰했지만 ‘예산’과 ‘부지’가 없다는 이유로 무산될 처지가 된 것이다.



한지장 류행영씨의 용인 공방 내부 : 여름철 더위로 작업 중단, 곰팡이가 핀 한지재료



중요무형문화재 제42호 악기장 이영수(77세)

“외마들이 지금 전속받고 있긴 한데,  
죽음이 3년째 없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 있을지...”

원래 삼성동 무형문화재전수관에 공방이 있었어요.

악기를 만들 땐 환기가 필요한데, 공방에 창문이 없어 환기가 안되더라구요.

창미라도 내달라고 건의를 했지만 거절당해서 집에서 하는 겁니다.”



악기장 이영수씨의 공방 내부 : 요즘 보기 드문 난로가 작업장에 놓여있음



악기장 이영수씨의 공방 입구 : 시간이 비껴간 지하 공방으로 내려가는 입구와 계단

중요무형문화재 악기장 제42호인 이영수씨는 전통악기를 제작하며 겪는 외로움과 고단함이 남다르다. 스트라디바리우스(바이올린 명기名器)의 가치는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고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수요가 끊이지 않지만, 한국 최고의 가야금을 만드는 악기장은 3년째 주문마저 끊긴 상태이다.



악기장 이영수씨와 그의 공방 : 주문이 끊겨 쌓이고 있는 거문고와 가야금 재료들



건칠공예가(국전작가) 정창호씨(59세)

“판로가 거의 없습니다.

생계 문제로 제작들이 지금 페인트공, 목수일을 하고 있어요.

포장마차 하는 친구도 있으니...

만타까울 정도가 아니라 확장할 밑입니다.

공예하는 사람들은 다 어렵습니다.

비닐하우스에 있으면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추죠.

폐고 같은 시설이 많으니까 지원만 해준다면

좋은 작품을 많이 만들 수 있고...

일본에서는 시나 국가에서 공방을 운영하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지정 후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공예지원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건칠공예가 정창호씨의 파주 자택 겸 공방

: 서울 외곽으로, 외곽으로 밀려나 비닐하우스 가건물로 거처를 옮김

국전 특선, 동아공예대전 은상, 일본 가나자와 국제디자인전 금상 수상 등 화려한 수상 이력을 가진 건칠공예가 정창호(59)씨의 공방 역시 비닐하우스다. 공예를 계속하기 위해서 서울 중심부에서 변두리로, 서울변두리에서 서울 외곽으로 자꾸만 밀려나왔다는 정창호씨. 그는 그런 사람이 비단 자신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며 다른 공예인도 대부분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한다.



건칠공예가 정창호씨의 공방 : 가건물 비닐하우스, 판로를 잃은 작품들이 쌓여만 간다.



화각기능전승자 이정훈씨(68세)

“먹고 살 것 생각하면 당장이라도 패러치우고 싶다.

전통문화의 맥이 끊어질까봐 소울 떼지 못한다.

미세 눈미 침침해서 잘 보이기도 않지만, 내가 말하면 할 사람이 없으니까”



화각기능전승자 이정훈씨의 성수동 공방 : 주문은 없지만 작업을 놓을 수 없다는 이정훈씨

서울 성수동 자택 지하공방에서 소뿔을 다듬던 화각(畵角)장인 이정훈(68)씨 역시 참담한 심정을 토로했다. “아들이 배우기는 하지만, 먹고 살 길이 없으니 업으로 권할 수는 없다”며 안타까워했다.



짚풀공예가 전성임씨

“지자체에서 이벤트성 지원을 하긴 하지만,  
 궁극적인 문제해결이 되지는 못합니다.  
 문화예술교육진흥원 ’ 06년 예산이 70억이라는데  
 현대미술에 주로 지원되고 전통복문은 거의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전통공예인들은 지금 미래로 먹고 살 수 없어요.  
 그렇다고 제작을 만 하고 판매에 주력할 수도 없는 처지고.  
 청담동에서 광고로, 문화촌에서 짜죽로...  
 다들 세간 팔아서 제작을 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전통공예교육이 정기교육 프로그램 속에 포함되어야 해요.  
 학교에서 클래식, 발레, 서양미술을 가르치면서  
 우리의 전통을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 이상하지 않나요?”

짚풀공예의 장인인 전성임씨. 공예를 하면서 제작과 판매를 동시에 해야 하는 어려움에 대해 토로하면서, 이벤트성 지원보다는 공예교육을 포함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함을 역설한다.



전통인형 전승자 이승옥씨

“만드는 것이 힘들고, 판로는 어렵고, 개로는 비싸고...”

직영판로가 없어 중간단계 판매자만 배분리는 구조예요.

전통인형 분야가 있지만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사람이 없고,

전통공예로 인정도 못 받는 실정입니다.

대장금이나 신돈 등 전통사극 덕분에 세인들의 관심을 받고 있지만,

(저 같은) 개인과 바로 연결되기 힘들어요. 홍보 가능한 통로도 없고...”



전통인형 전승자 이승옥씨의 경기도 고양시 소재 공방

: 가격경쟁력과 유통, 홍보 문제 등으로 값싼 중국산에 밀려 창고에 쌓여만 가는 우리 전통 인형

전통인형의 장인 이승옥씨. 판로도 어렵고, 정책의 일관성 부재로 자신의 전승 분야가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다.



중요무형문화재전수회관 공방 : 공예특성상 환기가 절실히 필요한 공방

중요무형문화재 제78호 입사장 홍정실씨

“여기 온 지인들이 그래 -여기서는 작업을 못하겠네- 라고...”

나라에서 공방을 내줬다고 부러워하지만, 빛 좋은 개살구죠.

창문도 없는데 개인적인 에어컨이나 선풍기는 설치를 못하게 돼 있어요.

(창문 없음) 3층 공방은 ‘창살 없는 감옥’이란 소리를 공예인들끼리도

할 정도예요. 외국에 많은 곳(작업실)을 다녀보았지만,

솔직히 (이곳은) 외국에서 누가 찾아와서 볼까 겁이 나요.”



중요무형문화재전수회관 공방 : 공예특성상 화기사용이 불가피함에도 화기사용금지

이밖에도 장인들은

“일본처럼 전통공예인들을 위한 공방촌 설립”(건칠공예가 정창호씨)

“학교 교육과정에 전통공예 도입”(짚풀공예작가 전성임씨)

“장인이 존경받는 사회의 인식”(나전칠기작가 박경옥씨)

“외제 명품과는 다른 전통공예작품의 명품 인식 확산”(전통칠기작가 김언욱씨)

“일정작품은 국가가 소장할 필요가 있다” (전통인형작가 이승욱씨) 등

전통공예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세계 최고면 뭘해…춡고 배고픈 걸”

[경향신문 2006-08-10]



■“전통문화를 살려달라” 는 류씨.

“배고파, 춡기도 하고.”

고유 전통문화인 한지 제작의 맥을 잇는 데 평생을 바친 류행영씨(75)의 첫 마디다. 류씨는 국내 유일의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 ‘한지장’이자 노동부 지정 ‘전승기능자’이다.

말복인 9일 오후 경기 용인시 외곽의 류씨 공방. ‘전통공예산업진흥법’의 입법화를 앞두고 실태조사를 위해 전통공예 공방을 찾은 탐방단에 류씨는 “공방을 살려달라”고 애절하게 말했다. 이날 탐방단은 ‘전통공예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여야 의원 26명(대표발의 박찬숙 의원) 중 일부 보좌관, 문화관광부·문화재청 관계자, 이철용(공예예술가협회)·박찬수(중요무형문화재기능보존협회) 이사장 등 10여명으로 구성됐다.

탐방단은 공방에 들어서면서 당황했다. 2개의 정부 부처가 인정한 장인이란 번듯한 명패가 부끄러울 정도로 공방은 열악했기 때문. “이 정도인 줄은 몰랐다”는 말이 연이어 나왔다. 비닐하우스 작업장은 희미한 형광등, 힘없이 돌아가는 선풍기 바람 속에 닥나무 껍질 등 한지 재료가 어지러이 널려있다. “먹고 살기 힘들

어. 전통적으로 만든 우리 한지를 찾는 사람이 적어. 세계 최고의 종이인데...문  
닫게 생겼어.” 불편한 다리에 눈까지 침침해진다는 류씨는 **“전통한지를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지 판매로는 생계유지마저 힘든 류씨. 그러다 보니 후계자  
도 나서지 않는다. 옆에 있던 (사)한지산업기술발전진흥회 차우수이사는 **“한지시  
장의 95%가 수입된 한지거나 수입 닥으로 제작된 실정으로 국가 차원의 대책없  
이는 조만간 전통적 한지문화는 사라진다”**고 설명한다.

이날 탐방단은 서울·수도권의 8개 전통공예 공방을 발품팔아 찾아다니며 장인들  
의 얘기를 청취했다. 국전 특선, 동아공예대전 은상, 일본 가나자와 국제디자인  
전 금상 수상 등 화려한 수상이력을 가진 건칠공예가 정창호씨(59)의 공방은 놀  
랍게도 경기 파주 외곽 비닐하우스였다. 정씨는 **“생계문제로 제자들이 지금 폐인  
트공, 목수일을 하고 있다”**며 **“안타까운 정도가 아니라 환장할 일”**이라고 전했  
다.

서울 성수동 자택 지하공방에서 소뿔을 다듬던 화각(畵角)장인 이정천씨(68). 이  
씨는 **“먹고 살 것 생각하면 당장 때려치우고 싶을 때가 많다”**면서도 **“전통문화  
의 맥이 끊어질까봐 손을 떼지 못한다”**고 말했다.

장인들의 삶이나 생각은 비슷했다. 전통문화의 맥을 이어가고 있지만 장인들의  
흔을 담은 ‘명품’은 수요가 적고, 판로마저 원활치 않아 생계유지조차 힘들다. 그  
러다보니 작업환경이 열악하고, 후계자가 없다. “먹고 살기 위해” 작품 활동에  
전념하기 어려운 실정인 데다 ‘전통의 현대적 계승’의 의미는 잘 알지만 ‘그림의  
떡’이다.

결국 이미 ‘바디장’ 등 우리 전통문화의 맥은 끊어졌다. 이는 전통문화의 가치를  
제대로 인식 못하는 사회, 문화재청 등 한 개 부처로는 지원의 한계가 명확한데도  
범국가적 차원의 지원책을 내놓지 못하는 정부 등이 주요 이유다.

장인들은 대안도 쏟아냈다. **“부자가 아니라 그저 작품활동을 통해 맥이 끊기지  
않는 수준의 판로 지원”**은 한 목소리.

이 외에 “일정 작품은 국가가 소장”(전통인형작가 이승옥) “일본처럼 전통공예인  
들을 위한 공방촌 설립”(정창호) “학교 교육과정에 전통공예 도입”(풀쥬작가 전  
성임) “장인이 존경받는 사회의 인식”(나전칠기작가 박경옥) “외제 명품과는 다  
른 전통공예작품의 명품 인식 확산”(전통칠기작가 김운억) 등이다.

장인들은 이날 ‘전통공예산업진흥법(안)’에 대해 큰 기대를 보였다. 박찬숙 의원은 **“민족정서와 지혜가 함축된 전통공예는 실용성·예술성을 지녔다”**며 **“국가 경  
쟁력 확보 등을 위해선 전통공예의 기술보전과 산업적 활용이 시급하다”**고 밝혔  
다. 이철용 이사장은 “이 법률안은 오는 21일 임시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라며  
“누구든지 현장을 보면 법률의 필요성을 뼈저리게 새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중요무형문화재 42호 ‘악기장’인 이영수씨는 **“전통문화의 맥이 끊어지면,  
이것도 수입할 거냐”**고 세상을 향해 쓴소리를 했다.

<도재기기자 jaekee@kyunghyang.com>



■ 류씨 공방과 건칠작품을 설명하는 정창호, 화각 작업중인 이정천씨.(위부터)

## [뉴스타임 현장] 전통공예마저 중국산에 밀려

[KBS 2TV 2006-08-16 08:11]



<앵커 멘트>

여러분 '장인'이다 라는 말 가끔 쓰시죠?

그런데 실제로 생활속에서 '장인'을 만나기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네, 여기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장인'이라는 명예는 있지만, 남 모르는 고생과 고민이 이만저만 아니라는데요.

이러다 우리 민족의 전통 기술이 사라지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네, 윤영란 기자와 함께 우리 장인의현주소를 짚어봅니다.

윤 기자!

안 그래도 우리 전통 공예품들이 값싼 중국 제품들에 밀려 고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리포트>

네, 그렇습니다.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을만한 작품들이지만, 요즘 실질적인 이유로 고전을 면치못 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기는 제작자들도 마찬가지인데요.

화면 보면서 자세한 이야기 전해 드리겠습니다.

마치 폐가를 연상시키는 낡고 허름한 비닐하우스.

널브러져있는 닥나무 껍질과 찢어진 창문들. 국내 유일의 전통 한지를 만드는 '한지장'

류행영 씨의 공방이라고 하기엔 믿겨지지 않을 정돕니다.

짚통같은 무더위에 냉방시설도 없이 작업을 하다 보니 류 씨의 얼굴엔 순식간에 붉은 땀방울이 맺히는데요.

<인터뷰> 류행영(75/중요무형문화재 117호 한지장) : "후계자 양성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막막하고 괴롭죠. 누가 천막집에서 기술을 배우려고 하겠어요."

천년의 세월을 이긴다는 전통한지지만 값싼 개량한지에 밀려난지 오래입니다.

보름만에 들어온 첫 주문이 100장, 한 장에 2,500원이니까 다해야 이십오 만 원.

재료비 빼면 한 달 수입이 고작 십여만원입니다.

<인터뷰> 류행영(75/중요무형문화재 117호 한지장) : "겨우 밥 먹고 살아요. 돈을 번다는 것은 꿈도 못 꾸고 밥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죠."

<인터뷰> 이경자(58/류행영 씨 부인) : "생활은 말도 못하죠. 무형문화재라는 이름만 달았을 뿐이지..."

상대방의 얼굴이 비칠 만큼 얇은 옥천지는 류 씨 만이 만들 수 있지만 그 고 유 기술을 물려줄 사람이 없습니다.

올해 나이가 벌써 75살, 건강마저 좋지 않아 하루 빨리 후계자를 양성하고 싶지만, 이런 상황에선 어림도 없습니다.

<인터뷰> 류행영(75/중요무형문화재 117호 한지장) : "(제가 가진 기술을) 가르치고 죽어야지 그냥 죽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정부에서 힘을 써주지 않으면 우리 전통한지의 맥은 끊기는 거야."

우리나라 최고의 건칠공예가 정창호 씨의 작업실 역시 공방이라는 이름이 무색합니다.

<인터뷰> 정창호(59/건칠공예가) : "비닐하우스에 있으면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죠. 폐교 같은 시설이 많으니까 지원만 해준다면 거기서 좋은 작품도 많이 만들 수 있고..."

꽃나뭇잎을 이용해 칠을 하는 건칠공예는 그 독특한 색감과 아름다움으로 국내 뿐 아니라 일본에서도 인정받고 있지만 제작기간이 길고 찾는 이가 없어 현재는 1년 평균 네, 다섯개 작품을 팔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인터뷰> 정창호(59/건칠공예가) : "(제작 기간이) 소품은 3개월, 대작은 8개월에서 1년이 걸려요. 그러니까 생활이 안 되고..."

<인터뷰> 한정민(46/정창호 씨 부인) : "제가 아르바이트로 식당에 나가서 일을

해야 생계가 나아지니까 그렇게 생활하고 있어요. (아이들의) 등록금을 제때 못 내줘서 속상할 때도 많았어요."

이러다보니 뜻을 갖고 찾아왔던 제자들마저 생활고를 못 이겨 공방을 떠나고 있는 데요.

<인터뷰> 정창호(59/건칠공예가) : "목수는 실내 디자인을 하러 나가고, 칠하는 사람은 페인트칠 하러 다니고, 돈이 있는 사람은 식당을 운영해요. 선생으로서 그런 모습을 보면 환장할 노릇이죠."

올해 52세의 정왕선 씨는 건칠공예 경력만 35년인 정창호 씨의 제자입니다.

하지만 현재 낮에는 아파트 설비 일을 보고 밤에는 이동포장마차를 하고 있는 데요.

<인터뷰> 정왕선(52/정창호 씨 제자) : "지금 기발과 해라가 잡혀 있어야 할 손인데 뜨거운 철판에 칼날을 잡고 있다는 자체가..."

전통문화의 거리 서울 인사동에서 조차 장인들의 공예품이 사라지고 값싼 중국산 제품들에 그 자리를 내주면서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인터뷰> 최희소(문화지구지킴이 인사동식구들 회장) : "(전통공예품을 외면하는 이유는) 첫째가 (비싼) 가격이고, 홍보도 부족해요. 비싼 만큼 구매력을 갖게 해주는 아이디어 상품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부재하다고 봐야겠죠."

전문가들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우리만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무형문화재들의 공예품만이라도 따로 전시, 판매하는 상설전시관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인터뷰> 박찬수(중요무형문화재기능보존협회 이사장) : "은행에서 저리자금을 준다거나, 공단을 만들어서 그분들이 열심히 일 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 주어야만 우리나라의 뿌리, 핵, 희망인 전통공예가 사라지지 않는다..."

판로도 없고, 열악한 작업 환경에 후계자마저 없는 전통공예 공방의 현실 속에서 우리 장인의 숨씨는 이제 역사책 속이나 박물관에서만 찾을 수 있게될 지 모릅니다.

<앵커 멘트>

우리의 전통공예품에 좀 더 관심을 가져주고, 가치를 알아주려는 노력도 필요하지만, 상황이 저렇다면 장인들의 처우 개선에 먼저 신경 써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것이 소중하다라는 말이 공허한 메아리가 되지 않아야 될텐데 말이죠. 안타깝습니다.



전승 여건 취약한 중요 무형문화재

| 종목          | 보유자 | 현재 상황             |
|-------------|-----|-------------------|
| 시장(화살)      | 조명제 | 사망                |
| 망건장         | 임덕수 | 사망                |
| 백동 연죽장(담뱃대) | 추옥관 | 사망                |
| 명주 짜기       | 조옥이 | 고령으로 작업 중단        |
| 바디장(베를 부름)  | 구진갑 | 고령으로 작업 중단        |
| 국성 돌실나이(삼베) | 김점순 | 고령으로 작업 중단        |
| 한산 모시짜기     | 문정옥 | 고령으로 작업 중단        |
| 제와장(기와)     | 한형준 | 전 이수자와 갈등으로 작업 중단 |
| 금속활자장       | 오국진 | 병으로 작업 중단         |
| 염장(발)       | 조대용 | 전수조교·이수자 없음       |
| 두석장(금속 장식)  | 박문열 | 전수조교·이수자 없음       |
| 낙죽장(대나무 공예) | 김기찬 | 전수조교 없음           |
| 궁장(활)       | 김박영 | 전수조교 없음           |
| 전통장(화살통)    | 김동학 | 전수조교 없음           |
| 두석장         | 김극천 | 전수조교 없음           |

\*본지 취재 결과 종합(공예 분야). 조옥이씨는 2월 명예보유자로 지정됨. 전수조교와 이수자는 보유자로부터 교육을 받고 일정 수준의 기량을 갖춘 이들을 가리킴.

## 중단되고

거북선·상여 장인 저세상으로

## 기피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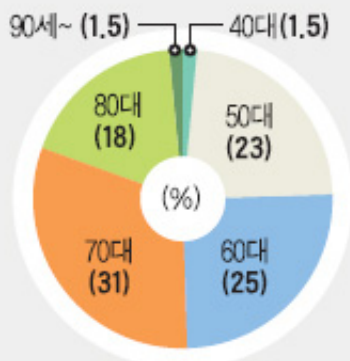
발·화살집 만들기 후계 못 구해

## 쪼들리고

“배고픈 기술”... 대부분 중도 포기



중요 무형문화재 기능 보유자의 나이는



※자료 = 문화재청(46개 공예 종목 보유자 61명)



참빗 장인 고행주씨



발 장인 조대용씨



바디 장인 구진갑씨



두석 장인 박문열씨

[중앙일보] 일본 도쿄 우에노에는 전통 의상인 기모노만 파는 백화점이 있다. 한국의 무형 문화재에 해당하는 '인간 국보'의 작품은 수천만원을 호가한다. 도쿄에는 컴퓨터 디자인 설계시스템(CAD)을 갖춘 3년 과정의 '오다 기모노 전문학교'도 있다. 장 폴 고티에(프랑스), 안나 수이(미국) 같은 유명 디자이너를 비롯해 기모노를 만들어 일본 시장에 내놓는 외국

브랜드만 30개가 넘는다. 그렇다면 우리 사정은 어떨까. 상당수 전통 공예 분야가 후계자를 찾지 못해 맥이 끊길 위기에 처해 있었다. "서민들의 뛰어난 창의력이 배어 있어 가장 순수한 한국적 미와 특성을 표현하는 분야"라는 공예의 운명을 짚어봤다.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은 우리나라 전통 한선(韓船) 방식으로 만든 거북선과 판옥선으로 대승을 거뒀다. 한선이 소나무를 쓰고 바닥이 평평한 반면 일본 배는 삼나무, 전나무를 쓰고 밑이 뾰족했다. 단단하고 전복 위험이 적은 조선 수군의 배는 암초가 많고 밀물과 썰물의 차가 큰 한국 바다에 적합했다. 한선을 주로 만들어 서울시 무형문화재로 지정됐던 박정옥 씨는 그러나 1994년 후계자를 두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다. 박씨의 손기술은 대가 끊겼다.

16년 전 조씨가 한창 작업을 할 당시 모습. 전승이 단절된 기예는 이뿐 아니다. 망자의 영혼을 싣고 마지막 이승 길을 넘던 상여. 지금은 전통 상여를 만들 이가 거의 자취를 감췄다. 경북 영양군에서 상여를 제작해와 1988년 국내 유일의 '상여장(喪輿匠.도 무형문화재)'으로 지정됐던 김재환씨. 그가 세상을 떠난 후인 2004년 2월 상여장은 무형문화재 목록에서 빠졌다. "대를 이어 만들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었으면 유지됐을 거예요. 김씨가 홀로 지켜오던 분야라...".(경북도 문화재과 진동성 사무관)

경기 수원시의 대목장(大木匠.전통 건축물 무늬 조각), 경북 김천시의 모필장(毛筆匠.붓), 경남 진주시의 연관장(煙管匠.담뱃대) 등도 장인이 후계자 없이 숨진 경우다.

국가가 지정한 '중요 무형문화재' 공예 종목은 46개. 이중 맥을 이을 사람이 뚜렷하지 않거나, 있더라도 일정 수준에 오르지 못해 지난해 '전승 취약'으로 분류된 종목이 40%(18개)에 이른다. 금속활자, 명주, 소반, 발, 기와 등 문화적 상징성이 큰 분야가 대부분이다.

취재팀은 시·도 무형문화재 100명을 상대로 설문 조사를 했다. 절반 가량(47%)은 "내 대나 다음 대에 기술의 맥이 끊길 것 같다"고 우려했다. "작업량이 과거에 비해 절반 이상 줄었다"는 응답도 56%나 됐다.

#### # 작업에서 손 놓는 장인들

충남 서천군에서 베틀 부품인 '바디'를 만들어온 구진갑(90.중요 무형문화재)씨는 몇 해 전부터 작업을 중단하고 서울 딸 집에서 생활하고 있다. 고령인데다 부인과 사별 후 숙식을 해결하기 어려워서다. 대나무를 가늘게 쪼개 촘촘하게 일렬로 배열해 만드는 바디는 그 정밀도가 옷감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 부품. 하지만 구씨가 손을 놓으면서 기능은 사장되다시피 했다. 기술을 익힌 마을 청년은 현재 다른 일을 한다.

"이걸 혀서 밥먹고 살게 해준다는 배울 사람이 있겠지유. 종일 방에 앉아 일하다 일어서는 머리가 빙 돌 정도니 자석덜도 하겠다고 안하고...".(구씨)

길쌈 마을로 이름난 경북 성주군 용암면 본리. 조옥이(85)씨의 집 뒷마루에는 베틀이 놓여 있었다. 14대 째 이어온 명주짜기로 1988년 중요 무형문화재 보유자가 된 조씨. 그러나 그의 베틀에는 먼지가 뿌옇게 쌓여 있었다. 베틀질을 하는 게 힘들어진 조씨는 지난 2월 실제 작업에서 손을 뗀 이들에게 지정하는 명예보유자가 됐다. 조씨의 후계자는 일흔을 넘긴 막내 동서 이규종씨.

"여름 되면 버스 대절해 구경오는 사람도 많은데 계속해야 안되겠습니까. 며느리가 배우는 중이지만 (길쌈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지예..".(이씨)

공예 장인들의 작업이 곳곳에서 중단되고 있다. 충남 서천군의 한산모시 짜기 무형문화재

보유자인 문정옥(78)씨는 "허리가 아파 몇 년 째 베를 짜지 못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전남 곡성군에서 삼베를 짜온 김정순(88.중요 무형문화재)씨도 "힘들어서 이제 못한다"고 했다. 100년 가량 중단된 금속활자 기술을 복원해 무형문화재로 지정됐던 오국진(62.충북 청주시)씨도 뇌졸중으로 작업을 못한다.

국가 지정 공예분야 무형문화재 보유자의 절반 이상(50.5%)은 70세 이상. 60대가 25%며, 40대는 한 명뿐이다. 취재팀이 설문 조사한 시·도 무형문화재 보유자 중에서도 60세 이상이 60%였다. 보유자의 연령이 높아지면 전승이 중단될 가능성도 커진다.

#### # 후계자 찾기는 하늘의 별따기

보유자가 작업을 못해도 후계자가 있다면 기술의 맥은 이어진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종목이 속출하고 있다. 경남 통영시 무전동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에서 만난 조대용(55)씨. 4대째 발을 만드는 염장(廉匠. 중요 무형문화재) 보유자다. 하지만 그는 후계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

"발 밖에서는 안이 안보이지만 안에선 밖이 흰하죠. 그래서 여름이면 여인네들은 발을 치고 편한 복장으로 더위를 피하곤 하지요. 선비 같은 멋스러움이 느껴진다고 할까요... 그런데 배울라카는 사람이 없어요."

발 하나를 만들려면 한 달에서 석 달 가량 꼬박 앉아 작업해야 한다. "배워들 만든 하지 않느냐"는 조씨의 설득에 아들(27.조선소 근무)이 가끔 익히지만 업으로 할지는 불투명하다.

고구려 쌍영총의 벽화에 등장하는 전통(箭筒.화살집). 경북 경주 민속공예촌에서 공방을 운영하며 화살집을 만들고 있는 김동학(75.중요 무형문화재)씨도 "그동안 몇 명에게 기술을 전수했지만, 중간에 직업을 바꾸거나 연락을 끊어버리더라"고 하소연했다.

#### # 판로 없어 생계 걱정할 판

전통 공예가 인기가 없는 것은 돈 벌이가 안되기 때문이다. 문영철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사무관은 "산업 발전과 생활 양식의 변화로 공예 분야는 큰 타격을 받고 있다"며 "전체 전승 취약 종목의 70%가 공예"라고 전했다.

전남 담양군 향교리에서 6대째 참빗을 만드는 고행주(70)씨는 "작업량이 예전에 비해 98% 줄었다"고 말했다. 여성들이 파마를 하고 플라스틱 제품이 넘치면서 참빗의 인기는 시들해졌다. "후계자로 올려놓은 아들도 대자리를 만들어요. 참빗을 잊어선 안된다고 신신당부하지만 몰라요, 나 죽고나면 어떻게 할란가..."

작업 환경도 열악해지고 있다. 경기도 고양시 벽제역 건너편 논두렁길을 따라가자 '중요 무형문화재 64호 기능 전수자의 집'이란 표말이 걸린 컨테이너와 비닐하우스가 나온다. 목가 구 등에 쓰이는 금속 장식물과 자물쇠를 만드는 '두석장(豆錫匠)' 박문열(57)씨는 2년간 임대한 이 곳에서 작업을 한다. 손으로 일일이 때려 문양을 넣지만 부속품인 장식은 큰 돈을 받지 못한다. 박씨는 "주문이 뜸해 요즘은 월 수입이 50만원도 안된다"고 한다.

◆ 무형문화재 =국가 지정 '중요 무형문화재'와 지자체 지정 '시·도 무형문화재'가 있다. 보유자에게 매월 전승지원금(중요 100만원, 시·도 60만~90만원)이 주어진다.

탐사기획부문 [deep@joongang.co.kr](mailto:deep@joongang.co.kr)

## [문화in] "사명감 ? 조상의 혼과 연애하는 기분"

[중앙일보 2006-06-02]



[중앙일보] 전통 공예를 살리겠다고 나선 젊은이들이 있다. 그저 "우리 것은 좋은 것"이란 막연한 사명감 때문이 아니다. 우리네 살림살이를 만들면서 멋과 재미를 발견했다는 게 그들의 얘기다.

# 모조품이 도저히 모방할 수 없는 1인치 차이는 명품을 만드는 장인의 손 기술에서 나온다. 박형박(32.서울 금천구)씨가 갓길 무형문화재 보유자인 부친 박창영(63)씨의 대를 잇기로 한 것도 전통의 힘을 믿기 때문이다. 형박씨는 갓길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다.

**"머리카락 보다 가는 명주실로 한올 한올 짜올려 만드는 갓만큼 섬세하고 독특한 디자인을 가진 모자는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아버지는 처음에 아들의 가업 전승을 반대했다. 하루종일 구부정하게 앉아 대나무를 가늘게 자르고 다듬어야 하는 힘든 일을 견딜 수 있을까 싶어서였다. 하지만 아들은 지난 2월 갓을 주제로 논문을 써 전통 복식디자인 분야의 석사 학위를 받는 등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전통 갓의 다양한 문양을 발굴할 생각입니다. 두고보세요. 언젠가는 갓이 일본 기모노처럼 세계적인 문화 상품이 될 날이 있을 테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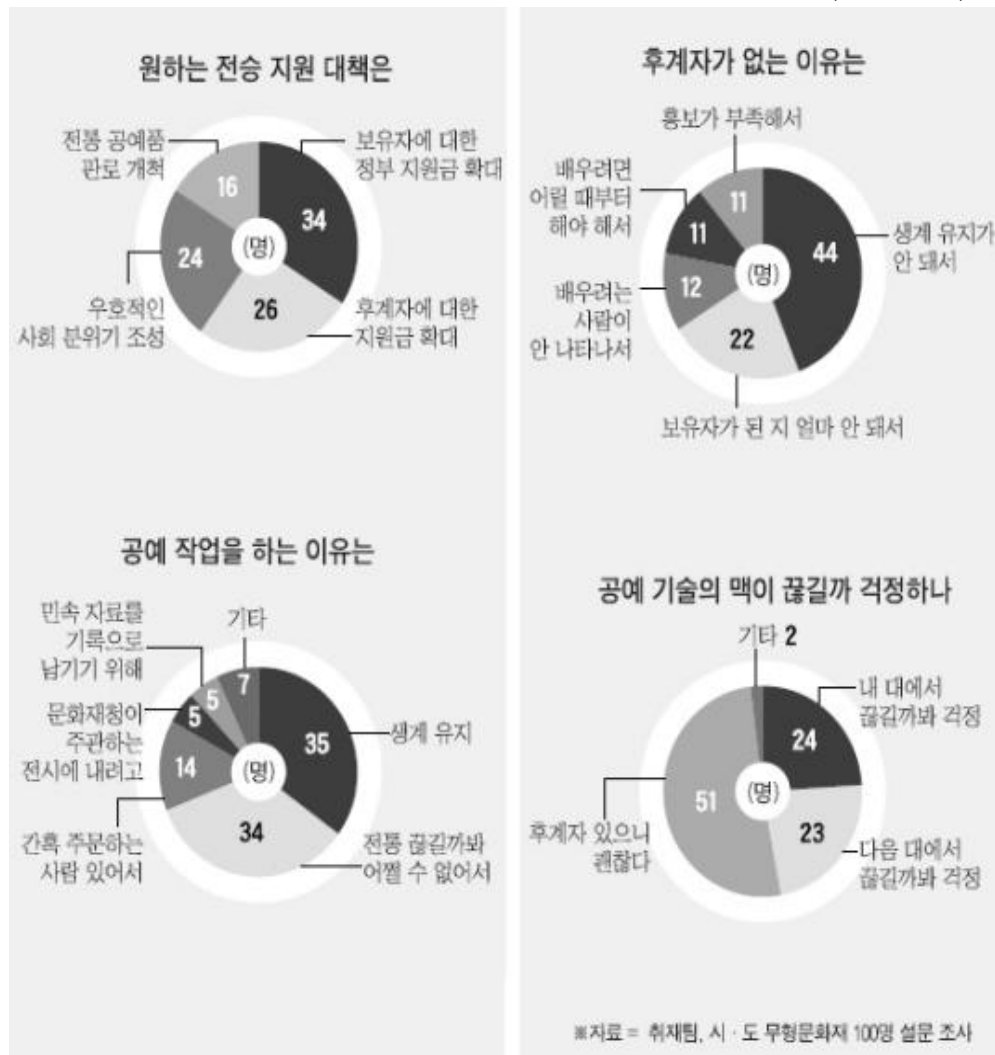
박은아씨(左)와 박은영씨가 서울 원서동 공방에서 오죽을 이용해 작품을 만들고 있다. # '오죽(烏竹) 자매'로 불리는 박은영(33).박은아(30)씨. 생면부지의 두 사람을 맺어준 건 5~10년 동안 말린 검붉은 대나무로 문갑,함 등 생활용품을 만드는 전통 공예였다.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오죽 공예품을 접한 두 사람은 세계 유일의 무형문화재 오죽장인 윤병훈(72)씨의 공방(서울 종로구 원서동)을 찾아 문하생이 됐다. 8년 동안 해온 간호사 일을 그만두고 이탈리아로 가구 디자인 유학을 떠나려던 은영씨는 가구 디자이너의 꿈을 접고 오죽 공예에 매달리고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외국인들이 오죽 작품을 보러 더 많이 옵니다. 이렇게 좋은 공예가 있는데 왜 유학을 가려했는지 모르겠어요. 오죽을 한복처럼 한국을 대표하는 자랑거리로 만들고 싶어요."(은영씨)

"매일 9시간 넘게 대나무 조각과 씨름하다보면 손에 굳은 살이 박히고 상처가 날 때도 있어요. 하지만 다 굵어버린 스승님의 손에 비하면 아직 멀었죠."(은아씨)

#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한국문화의 집'에서 열리는 전통건축공예학교. 외국계 화장품 회사를 다니던 이명희(36.여)씨는 올 초부터 이 곳에서 전통 가구를 만드는 소목 공예를 배우고 있다. 외국에서 가구 디자인을 공부할 예정인 그는 "선과 면의 조형미가 뛰어나고 짜임 기법이 다양한 전통 가구에서 창의적 디자인의 실마리를 잡아보겠다"고 했다. 다른 수강생 이미나(29.여)씨도 궤.문갑 등 전통 세간을 만드는 장인이 되고 싶다고 했다. "세계적으로 아시아풍 디자인이 뜨겁잖아요. 특히 우리나라 전통 가구는 현대식 디자인과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기 때문에 전망이 밝다고 생각합니다."

"전통 가구는 손때가 탈수록 풍기는 맛이 일품입니다."(한창현.36.공인노무사), "뽕칠을 하면 맨발로 흙을 밟을 때와 같은 자연스러움이 묻어나요."(최정란.29)



전통 공예를 배우는 이들은 미처 알지 못했던 한국의 미에 눈을 뜨게 됐다고 입을 모았다.

탐사기획부문 deep@joongang.co.kr



## II. 전통공예의 현주소

한국의 전통공예는 국가를 대표하는 상징성, 문화적 가치가 높은 예술성, 세련된 멋과 품위를 지닌 실용성까지 겸비하고 있어 국제적인 전략사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일본, 중국을 비롯해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전통공예의 진흥정책과 제도개선에 심혈을 기울이며, 자국 전통공예의 우수성을 홍보하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한국에서 전통공예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나 개인과 사회의 인식은 낮은 편이다. 그동안 전통공예는 문화재보호법에 의거하여, 전승과 보전이라는 데 치중해왔기 때문에 현대생활과 국민의 실생활에서 유리된 채 존재해 왔다. 또한, 정부의 전승과 보전 정책 또한 너무나 열악하여 중요무형문화재를 비롯해 대다수 명장들이 정부로부터 장인으로 지정을 받은 후 여전히 생활고에 시달리며 전승계승자가 없어 전통의 맥이 끊길 위기에 빠져 있다.

그러는 사이 정체를 알 수 없는 중국산 및 동남아산 전통공예모조품이 활개를 치고 있고, 전통공예의 디자인을 차용한 제품들이 무분별하게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는 전통공예의 보호라는 소극적인 태도로 말미암아 현대 산업방식에 적응하지 못한 까닭도 있고, 실용성 측면에서 국민의 생활과 변화에 대응하지 못한 점도 있다.

그 중 1~2명의 인력으로 구성된 소규모 공방의 제작 상황은 전통공예품 수요에 대한 생산방식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90%가 넘는 개인사업체에서 전통공예품을 제작하고 있으며, 거의 모든 과정이 수작업으로 이루어져 생산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또한, 유통 인프라의 부족과 마케팅 부재, 디자

인 및 제품개발 노력의 부족으로 인해 판로개척과 수익창출의 기회가 부족하다는 사실이다.

인사동을 비롯해 전국의 관광상품 판매점에서는 외국인의 왕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전통공예품 판매고객의 81.9%가 내국인이었으며, 외국인은 13.2%에 그칠 정도로 낮을 뿐 아니라, 심지어 중국산 및 동남아산 값싼 저질의 모조 전통공예품이 판을 치고 있다. 해외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과 홍보전략을 수립하는 것은 앞으로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예품의 판매형태에서는 자사판매장을 이용하는 경우가 65.7%<sup>1)</sup>에 달할 정도로 유통업자 활용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판매방식은 생활여건이 어려운 공예인들의 안정적인 수익창출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2005년 기준으로, 유통업체의 소재별 취급비율은 도자기(46.1%)-목/죽세공(14.2%)-섬유(13.8%)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용도별 취급비율로 보면 생활소품(38.5%)-장신구/잡화(21.5%)-가구(12.2%) 순이었다. 2) 전통공예품에서도 인기상품의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비인기 종목의 공예품 제작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과 유통체재를 구축하는 것도 전통공예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빠뜨릴 수 없는 부분이다.

특히 2004년 통계자료에 의하면 수출이 515,532,000달러, 수입이 516,107,000달러에 이를 정도로 수입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이는 그동안 전통공예품에 대한 해외 마케팅 부족을 그 원인으로 지적할 수 있다. 국가경쟁력의 침병으로 떠오른 한국 전통공예품의 해외 인지도를 고취시키고, 적극적인 마케팅을 통해 무역증대에 기여하고 경제적인 파급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전략사업으로 승화시킬 필요가 있다.

1) 한국 전통공예의 실태와 과제, 권세기(입법정보연구원), 2005.9

2) 2005 공예문화관광상품 제작·유통 실태조사, p51

이러한 차원에서 본 의원은 전통공예부문 중요무형문화재를 대상으로 전수 설문조사를 실시, 전통공예의 현주소를 확인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했다. 전통공예에 종사하고 계시는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총 63명중 55명이 전화와 팩스 등을 통해 설문에 성실히 응답해 주셨다.

## 1. 전통공예 분야에 지정받은 중요무형문화재의 현황

| 지정<br>번호 | 지정<br>명칭 | 성명<br>(생년)  | 인정일        | 주요수상 및 경력                                                                                                                                                            | 후계자 여부                                                                                                  |
|----------|----------|-------------|------------|----------------------------------------------------------------------------------------------------------------------------------------------------------------------|---------------------------------------------------------------------------------------------------------|
| 제4호      | 갯일       | 김 인<br>20년생 | 1985-02-01 | '80.9 제5회 전승공예대전 입선<br>'81.11.30 제6회 전승공예대전 입선<br>'84.10 제9회 전승공예대전 입선<br>'93.5 분다 대상(분다제주중앙클럽 주관)                                                                   | 강순자(조교, 59세)<br>'89.10 제14회 전승공예대전 입선                                                                   |
| 제4호      | 갯일       | 정춘모<br>40년생 | 1991-05-01 | '73.1.1 인간문화재 작품전시회 1회2회 4회 5회 6회 장려상<br>'78.12.30 전승공예전 은상수상<br>'84.12.30 전승공예전 9회 문화공보부 장관상 수상<br>'85 전승공예대전 장려상(흑대랍진사립)                                           | 정한성(조교, 37세)<br>'91.10.29 제16회 전승공예대전 소갯 입선<br>'92 제17회 전승공예대전 장려상<br>'93 제18회 전승공예대전 장려상               |
| 제4호      | 갯일       | 장순자<br>40년생 | 2000-07-22 | '83.10.25 제8회 전승공예전 양태부문 입선<br>'84.10.31 제10회 전승공예전 양태부문 입선<br>'85.7.1 제주도지사 감사장<br>'85.10.31 제11회 전승공예전 양태부문 장려상<br>'86.10.21 제12회 전승공예전 입선                         | 양선미(이수자, 33세)<br>'92.9~'98.9 사단법인 제주복지회 입사                                                              |
| 제4호      | 갯일       | 박창영<br>43년생 | 2000-07-22 | '88.6.30 제13회 전승공예대전 특별상 (박쥐 문양각)<br>'89.6.30 제14회 전승공예대전 특별상 (박쥐 문양각)<br>'90.6.20 제15회 전승공예대전 백립 장려상<br>'91.6.30 제16회 전승공예대전 음양사립 장려상<br>'92.6.30 제17회 전승공예대전 백립 입선 | 박형박(이수자, 30세)<br>'03.11 제28회 대한민국 전승공예대전 입선<br>'04.11 제29회 대한민국 전승공예대전 입선<br>'05.11 제30회 대한민국 전승공예대전 입선 |

|      |             |             |                |                                                                                                                                                                 |                                                                                                              |
|------|-------------|-------------|----------------|-----------------------------------------------------------------------------------------------------------------------------------------------------------------|--------------------------------------------------------------------------------------------------------------|
| 제10호 | 나전장         | 송방웅<br>40년생 | 1990-<br>10-10 | '81.11.30 제6회 전승공예전 문공부장관상 수상<br>'82.9.18 제12회 도관광민예품경진대회 장려상 수상<br>'82.10.30 제7회 전승공예전 문공부장관상 수상<br>'83.10.26 제8회 전승공예전 국무총리상 수상<br>'84.10.27 제9회 전승공예전 특별상 수상 | 양옥도(조교, 57세)<br>'94.10 제19회 전승공예대전 입선<br>'95.10 제20회 전승공예대전 특별상<br>'96.10 제21회 전승공예대전 입선                     |
| 제10호 | 나전장         | 이형만<br>46년생 | 1996-<br>12-10 | '66.10.21 제1회 민속공예전람회(장려상)<br>'72.9.27 제6회-제8회-제5회 입선(동아공예대전)<br>'84.10.31 제9회-제10회-제12회 전승공예대전 입선<br>'88.11 제13회 전승공예대전 국무총리상<br>'91.10 제16회 전승공예대전 문화부장관상     | 김옥석(조교, 47세)<br>'87.5.7 제17회 서울특별시 공예품경진대회 입선<br>'88 제18회 전국공예품경진대회 입선<br>'92.10.1 제17회 전승공예대전 입선            |
| 제14호 | 한산모시짜기      | 문정옥<br>28년생 | 1967-<br>01-16 | '78.7.31 서천군 주최 한산모시품평회 장려상 수상<br>'02.10.7~11.17 보유자작품전 출품                                                                                                      | 박승월(조교, 54세)<br>'02.10.7~11.17 보유자작품전 출품<br>고분자(조교, 50세)<br>'02.10.7~11.17 보유자작품전 출품                         |
| 제14호 | 한산모시짜기      | 방연옥<br>47년생 | 2000-<br>08-22 | '86.10.21 제11회 전승공예전 입선<br>'90 제15회 전승공예대전 장려상<br>'93 제17회 전승공예대전 장려상<br>'95 제19회 전승공예대전 입선<br>'96 제20회 전승공예대전 입선                                               | 황선희(이수자, 47세)<br>'98.9.1 전수장학생 선정<br>'03.9.11 이수자 선정<br>이현주(이수자, 39세)<br>'98.9.1 전수장학생 선정<br>'03.9.11 이수자 선정 |
| 제22호 | 매듭장         | 김희진<br>34년생 | 1976-<br>06-30 | '66.10.1 제1회 민속공예전 문교부장관상수상<br>'70.7.1 제4회 동아공예전대전 금상수상<br>'71.7.1 제5회 동아공예전대전 대상수상<br>'72.4.1~ 문화재위원회 전문위원<br>'73.3.1~ 김희진전승공예연구소 개설 전수교육실시                    | 김혜순(조교, 61세)<br>'86.1.1 대한민국 전승공예대전 직물공예부문 입선<br>'79.10.10~ 한국매듭연구회 창립회원<br>'80~ 한국매듭연구회 운영위원                |
| 제28호 | 나주의<br>셋골나이 | 노진남<br>36년생 | 1990-<br>10-10 | '80.9.29 제5회 전승공예전 무명베 출품 입선<br>'81.11.30 제6회 전승공예전 무명베 출품 입선<br>'82.10.30 제7회 전승공예전 무명베 출품 입선 및 장려상<br>'83.10.25 제8회 전승공예전 무명베 출품 장려상<br>'84 제9회 전승공예전 장려상     | 김홍남(조교, 64세)<br>'02.10.7~11.17 보유자작품전 출품                                                                     |
| 제31호 | 낙죽장         | 김기찬<br>55년생 | 2000-<br>07-22 | '82.10.1 전남도 공예품 경진대회 특선2회<br>'83.9.1 전국 공예품경진대회 입선2회<br>'84.9.1 전남도 공예품 경진대회 우수상 수상<br>'84.9.1 제9회 전승 공예전 장려상 수상<br>'02.12.8~12.31 공개행사 '금죽헌 두번째 마당            | 김은실(전수장학생, 22세)                                                                                              |

|      |                  |             |                |                                                                                                                                                                                            |                                                                                                                                                                      |
|------|------------------|-------------|----------------|--------------------------------------------------------------------------------------------------------------------------------------------------------------------------------------------|----------------------------------------------------------------------------------------------------------------------------------------------------------------------|
| 제32호 | 곡성의<br>돌실나이      | 김점순<br>18년생 | 1970-<br>07-22 | '74.10.26 석곡 단위 농업협동조합 주최 제1회 새농민대회 문화상 수상<br>'75.11.2 석곡 단위 농업협동조합 주최 제2회 새농민대회 문화상 수상<br>'75.11.15 제7회 남도 문화제 최고상 수상<br>'79.10.15 제3회 곡성군민의 날 본상 수상<br>'04.10.23~31 전남무형문화재보존회 제7회 공개전시회 | 양남숙(조교, 62세)<br>'86 제11회 전승공예대전 입선<br>'87 제12회 전승공예대전 입선<br>'91 농협 30주년기념축제 우수상                                                                                      |
| 제35호 | 조각장              | 김철주<br>33년생 | 1989-<br>12-01 | '78 전승공예대전 입선. 장려상<br>'78-'86 전승공예대전 출품<br>'80 각종 전통공예 작품전 출품<br>'87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작품전 출품<br>'02.10.7~11.17 보유자작품전 출품                                                                         | 남경숙(조교, 55세)<br>'75-'81 제24회~제30회 대한민국 국전 입선<br>'83-'85 제2회~제4회 미술대전 입선<br>'90.6.11 제5회 대한민국 공예대전 대상 수상                                                              |
| 제38호 | 조선왕<br>조궁중<br>음식 | 황혜성<br>20년생 | 1973-<br>11-11 | '86.8.1 국민훈장 목련장 수상<br>'90.10.1 대통령 표창<br>'93 일본 7개 도시 순방 강연<br>'99.10.9 공개행사<br>'03.9.27~28 공개행사 "만남·緣·덕수궁에 펼쳐는 궁중음식展"                                                                    | 한복려(조교, 58세)<br>'90 전통음식 보급 공로상<br>'91.11 한국 주재 외국인 김치 담그기 대회<br>'93.11 일본 국제 교류재단 초청 7개도시 궁중음식 발표회<br>정길자(조교, 57세)<br>'86.12.13 보건사회부장관 감사장<br>'87.9.25 한국관광협회장 표창장 |
| 제42호 | 악기장              | 이영수<br>29년생 | 1991-<br>05-01 | '79.11.30 제4회 전승공예전 입선<br>'81.9.27 한국국악교육회 감사패<br>'84.10.31 제9회 전승공예전 장려상<br>'91.8 한국문화재보호협회 감사패<br>'04.9.16~9.22 해외전시 "제4회 뉴욕 추석 맞이 한민족 대축제 및 농특산물세계박람회" 참가                               | 이동윤(조교, 49세)<br>'93 제18회 전승공예대전 입선<br>'94 제19회 전승공예대전 입선<br>'96.10 제21회 전승공예대전 특선                                                                                    |
| 제42호 | 악기장              | 고흥곤<br>51년생 | 1997-<br>03-24 | '84 전승공예대전 입선<br>'86 국악대상 특별상<br>'86 전승공예대전 장려상<br>'87 전승공예대전 장려상<br>'94 자랑스런 서울시민상(서울시)                                                                                                   | 김영렬(조교, 54세)<br>'93 제18회 전승공예대전 입선(가야금)<br>'94 제19회 전승공예대전 입선(양금, 아쟁)<br>'96 제21회 전승공예대전 입선(풍류가야금)                                                                   |
| 제47호 | 공시장              | 김박영<br>33년생 | 1996-<br>12-10 | '84 제9회 전승공예대전 입선<br>'85 제10회 전승공예대전 입선<br>'86 제11회 전승공예대전 입선<br>'02.10.7~11.17 보유자작품전 출품<br>'04.9.16~9.22 해외전시 "제4회 뉴욕 추석 맞이 한민족 대축제 및 농특산물세계박람회" 참가                                      | 김기원(이수자, 54세)                                                                                                                                                        |
| 제47호 | 공시장              | 유영기<br>36년생 | 1996-<br>12-10 | '82 정무제1장관 감사패<br>'90 제15회 전승공예대전 장려상<br>'91 제16회 전승공예대전 장려상<br>'01.5.19~27 영집공시박물관 개관 특별전<br>'02.10.7~11.17 보유자작품전 출품                                                                     | 유세현(조교, 41세)<br>'97 제22회 전승공예대전 입선(울고도리, 효시)<br>'98 제23회 전승공예대전 장려상(뽕거리살)<br>'99 제24회 전승공예대전 입선(애엽전)                                                                 |

|       |           |             |            |                                                                                                                                                      |                                                                                                                        |
|-------|-----------|-------------|------------|------------------------------------------------------------------------------------------------------------------------------------------------------|------------------------------------------------------------------------------------------------------------------------|
| 제 48호 | 단청장       | 홍점석<br>39년생 | 1997-03-24 | ‘70 제1회 불교미술공모전 불화부문 입선<br>‘71 제2회 불교미술공모전 불화부문 입선<br>‘75 제6회 불교미술공모전 불화부문 입선<br>‘78 제3회 인간문화재 공예작품전시회 입선<br>‘02.10.7~11.17 보유자작품전 출품                | 김용우(조교, 61세)<br>‘83 제8회 전승공예대전 입선<br>‘85 제11회 불교미술대전 입선<br>‘87.2.28 성북구청장 표창                                           |
| 제 53호 | 채상장       | 서한규<br>30년생 | 1987-01-05 | ‘79 제4회 인간문화재공예전 장려상<br>‘79.2.1 전남 관광민예품경진대회 우수상<br>‘81.2.1 담양군민의날 죽공예전 금상<br>‘82 제7회 전승공예전 대통령상<br>‘84 제9회 전승공예전 장려상                                | 서신정(조교, 54세)<br>‘86.5.10 담양군민의 날 죽제품 경진대회 최우수상<br>‘86.7.1 전국관광민예품경진대회 장려상<br>‘86.10.31 제11회 전통공예전시회 장려상                |
| 제 55호 | 소목장       | 설석철<br>25년생 | 2001-09-06 | ‘83 전국공예품 경진대회 입선<br>‘95 전국공예품 경진대회 특선<br>‘02.10.7~11.17 보유자작품전 출품<br>‘04.10.23~10.31 전남무형문화재보존회 제7회 공개전시회<br>‘04.11.11~17 설석철의 전통 한국의 목가 구전         | 설년운(이수자, 44세) 외 2명<br>‘00.6 제30회 전국공예품대전 전남 대회 장려상 수상<br>‘00.12 제25회 대한민국 전승공예대전 입선<br>‘01.5 제31회 전국공예품대전 전남 대회 장려상 수상 |
| 제 60호 | 장도장       | 박용기<br>31년생 | 1978-02-23 | ‘71.10.1 전국관광민예품경진대회 장려상<br>‘73.10.1 인간문화재 공예전 장려상<br>‘91.5~6 미국 캘리포니아 파사데나센타 전시<br>‘02.10.7~11.17 보유자작품전 출품<br>‘04.10.23~10.31 전남무형문화재보존회 제7회 공개전시회 | 박종균(조교, 43세)<br>‘88 전승공예대전 입선<br>‘89 전승공예대전 입선<br>‘90 전승공예대전 입선                                                        |
| 제 60호 | 장도장       | 한병문<br>39년생 | 1993-07-05 | ‘87 제16회 공예품경진대회 우수상 및 특상 수상<br>‘89 제14회 전승공예대전 입선 및 장려상<br>‘90 제1회 생활공예창작공모전 우수상<br>‘91 제16회 전승공예대전 문화부장관상 수상<br>‘04.9.9~9.12 국회 전통공예작품전시회 시연       | 한상봉(조교, 45세)                                                                                                           |
| 제 64호 | 두석장       | 김극천<br>51년생 | 2000-07-22 | ‘82 전승공예대전 입선<br>‘82.11.30 전승공예대전 출품<br>‘84 전승공예대전 출품<br>‘01.12.23~30 공개행사<br>‘02.10.7~11.17 보유자작품전 출품                                               | 김진환(이수자, 24세)<br>‘01.10.4 전주장학생 선정<br>‘05.8.23 이수자 선정                                                                  |
| 제 64호 | 두석장       | 박문열<br>50년생 | 2000-07-22 | ‘94.10.1 제19회 전승공예대전 입선<br>‘94.11.29 서울 정도 600년 "자랑스런 시민상"<br>‘95.10.18 제20회 전승공예대전 장려상<br>‘96.10.22 제21회 전승공예대전 장려상<br>‘98.9.29 제23회 전승공예대전 특별상     | 오승식(전수장학생, 35세) 외 1명<br>‘03.9.5 전수장학생 인정                                                                               |
| 제 65호 | 백동연<br>죽장 | 황영보<br>32년생 | 1993-07-05 | ‘83 제8회 전승공예전 입선<br>‘84 전북 공예품경진대회 특선<br>‘84 제9회 전승공예대전 입선<br>‘86 전북공예품경진대회 입선(1986-1991)<br>‘92 제17회 전승공예대전 장려상                                     | 황기조(조교, 43세)<br>‘98.6.30 이수자 인정<br>‘04.3.20 조교 인정                                                                      |

|       |     |             |                |                                                                                                                                                                                          |                                                                                                                                              |
|-------|-----|-------------|----------------|------------------------------------------------------------------------------------------------------------------------------------------------------------------------------------------|----------------------------------------------------------------------------------------------------------------------------------------------|
| 제 66호 | 망건장 | 이수여<br>23년생 | 1987-<br>01-05 | ‘80.9.29 전승공예전 장려상<br>‘86.10.21 제11회 전승공예전 입선<br>‘02.10.7~11.17 보유자작품전 출품 및 시연<br>매년1회 보유자 작품전 출품, 전통공예 제작<br>과정 시연, 제주도 한라문화제 참가                                                        | 강전향(조교, 63세)<br>‘90.10.30 제15회 전승공예대전 입<br>선<br>‘91.10.29 제16회 전승공예대전 입<br>선<br>‘90.10.30 제15회 전승공예대전 입<br>선<br>‘91.10.29 제16회 전승공예대전 입<br>선 |
| 제 67호 | 탕건장 | 김공춘<br>19년생 | 1980-<br>11-17 | ‘75.10.9 제3회 육영수여사배 참가에 따른<br>입상<br>‘80.9.29 제5회 전승공예전 출품작 입선<br>‘82.6.29 한미수교 100주년 한국전승공예<br>출품 감사패                                                                                    | 이순자(이수자, 56세)<br>‘85.7.1 전수장학생 인정<br>‘90.10.10 이수자 인정                                                                                        |
| 제 74호 | 대목장 | 전흥수<br>38년생 | 2000-<br>08-22 | ‘98.12 자랑스런 충남인상 수상(충청남도) / 문<br>화체육부장관 공로패<br>‘99.10 예산군민의 상 수상<br>‘99.11 1999년 좋은 한국인 대상 수상<br>(MBC, 한국전력)<br>‘97 마곡사 종무소 해체복원<br>‘97 온양지씨 재각 신축                                       | 보유자가 2000년도에 인정되어 현재 이<br>수자 양성 중                                                                                                            |
| 제 74호 | 대목장 | 신응수<br>42년생 | 1991-<br>05-01 | ‘91.10.21 대통령 표창<br>‘91~‘93 단양 구인사 조사전<br>‘91~‘93 부산 운수사 대웅전<br>‘96~현재 경북궁 복원<br>‘96~현재 창덕궁 인정전 외행각 복원                                                                                   | 문기현(조교, 40세)<br>‘94.10.15 이수자 인정<br>‘96.2.1 전수보조자 인정<br>‘97 창덕궁 복원공사                                                                         |
| 제 74호 | 대목장 | 최기영<br>45년생 | 2000-<br>08-22 | ‘84 조계종 총무원장으로부터 감사패 (용문<br>사 공사)<br>‘96 조계종 총무원장으로부터 감사패 (보문<br>사 공사)<br>‘04.10 대한민국 옥관문화훈장 수상<br>‘00 고려송의회 고려종묘 건설 중<br>‘04.9.16~9.22 해외전시 "제4회 뉴욕 추석맞<br>이 한민족 대축제 및 농특산물세계박람회"참<br>가 | 보유자가 2000년도에 인정되어 현재 이<br>수자 양성 중                                                                                                            |
| 제 77호 | 유기장 | 이봉주<br>26년생 | 1983-<br>06-01 | ‘02.8.31~9.16 교도전통공예전시 "한국의<br>전통문화의 향기전" 출품<br>‘02.10.7~11.17 보유자작품전 출품<br>‘04.4.21~5.9 해외전시 "2004 프랑스 파<br>리 국제박람회"                                                                    | 이형근(조교, 47세)<br>‘87.10 제12회 전승공예대전 장려<br>상<br>‘88 전국공예품경진대회 전국상공<br>회의소장상<br>‘89 전국공예품경진대회 대상                                                |
| 제 77호 | 유기장 | 한상춘<br>48년생 | 1997-<br>03-24 | ‘84.10 제9회 전승공예대전 장려상<br>‘85 제10회 전승공예대전 한국문화예술진<br>흥원장상<br>‘87 제12회 전승공예대전 입선<br>‘92 제17회 전승공예대전 입선<br>‘95 제20회 전승공예대전 입선                                                               | 이수자 양성 중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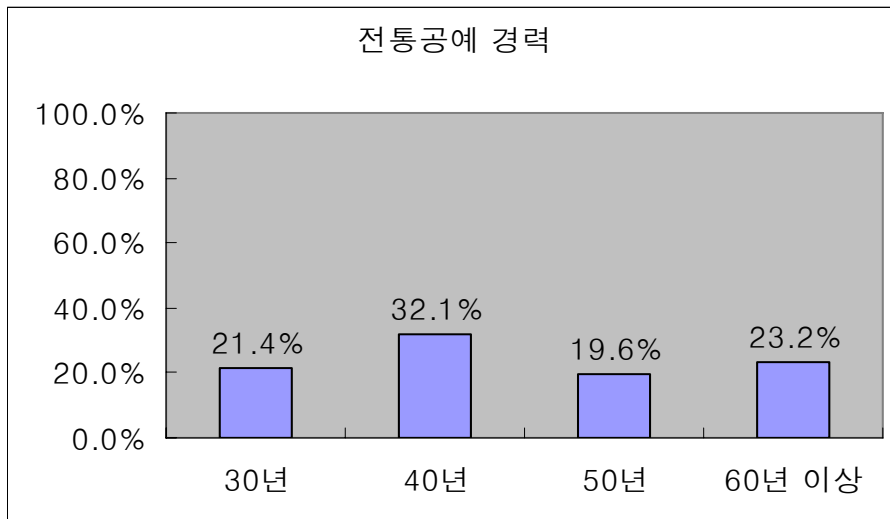
|        |        |             |            |                                                                                                                                                                                                  |                                                                                     |
|--------|--------|-------------|------------|--------------------------------------------------------------------------------------------------------------------------------------------------------------------------------------------------|-------------------------------------------------------------------------------------|
| 제78호   | 입사장    | 홍정실<br>47년생 | 1996-03-11 | '02.1.21~25 해외전시(태국)<br>'02.10.7~11.17 보유자작품전 출품<br>'03.10.3~10.15 해외전시 "미주이민 100주년 기념 초대전 <한국의 미-아름다운 몸치레><br>'03.9.5~9.28 공개행사 "2003 길금의 조형 기획전 ,마음을 담는 그릇>"<br>'04.9.14~9.21 공개행사 "아름다운 은실박이" | 승경란(조교, 43세)<br>'00 제19회 대한민국 미술대전 입선<br>'00 제25회 전승공예대전 입선<br>'00 제6회 국민예술협회대전 특선  |
| 제80호   | 자수장    | 한상수<br>35년생 | 1984-10-15 | '57 국전 공예부 3회 입선<br>'79 인간문화재공예전 문공부장관상<br>'81 전승공예전 대통령상<br>'02.8.30~9.16 교토전통공예전시 "한국의 전통공예의 향전" 사연<br>'03.4.10~5.10 공개행사 "한상수 자수한평생전"                                                         | 김태자(조교, 61세)<br>'88.4.15 서울시장상<br>'91.10.29 전승공예대전 대통령상<br>'96.11.29 서울 시민상 수상      |
| 제80호   | 자수장    | 최유현<br>36년생 | 1996-12-10 | '87 제12회 전승공예대전 국무총리상<br>'88 제13회 전승공예대전 대통령상<br>'89 성지상 수상<br>'79 미국 초대전<br>'84 일본 동경 초대전                                                                                                       | 김영희(이수자, 55세) 외 4명<br>'02.8.31~9.16 교토전통공예전시 "한국 전통문화의 향기전" 출품                      |
| 제86-가호 | 문배주    | 이기춘<br>42년생 | 1995-06-01 | '87.7.1 전수장학생 인정<br>'92.6.30 이수자 인정<br>'95.6.1 보유자 인정                                                                                                                                            | 이승용(조교, 30세)<br>'96.7.2 이수자 인정<br>'97.8.1 전수보조자 인정                                  |
| 제86-나호 | 경주교동법주 | 최 경<br>44년생 | 2006-03-13 | '87.7.1 전수장학생 인정<br>'92.6.30 이수자 인정<br>'94.7.1 보유자후보 인정<br>'06.3.13 보유자 인정<br>'03.3.29~4.6 경주교동법주공개발표회                                                                                           | 서정애(이수자, 57세)<br>'87.7.1 전수장학생 인정<br>'92.6.30 이수자 인정                                |
| 제88호   | 바디장    | 구진갑<br>17년생 | 1988-08-01 | '89 서천군 공예품경진대회 입상 (1989-1991)                                                                                                                                                                   | 김재중(이수자, 31세)                                                                       |
| 제91호   | 제와장    | 한형준<br>29년생 | 1988-08-01 | '43.6~ 전남 보성군 보성읍 용문리 소재 제와장 근무<br>'45.8~ 故최길수 선생께 제와일 전수 받음<br>'46~ 전남 장흥의 안민토제와장 공장에서 전수<br>'04.10.23~10.31 전남무형문화재보존회 제7회 공개전시회                                                               | 고을식(이수자, 56세) 외 3명<br>'88.12.1 전수장학생 인정<br>'93.11.30 이수자 인정                         |
| 제93호   | 전통장    | 김동학<br>31년생 | 1989-06-15 | '81.1.1 제6회 전승공예전 특별상<br>'82.1.1 제7회 전승공예전 장려상<br>'83.1.1 제8회 전승공예전 문공부 장관상<br>'87.1.1 제12회 전승공예대전 문공부 장관상<br>'04.9.16~9.22 해외전시 "제4회 뉴욕 추석 맞이 한민족 대축제 및 농특산물세계박람회"참가                            | 김성권(이수자, 34세)<br>'01.11 대한민국 전승공예대전 입선<br>'02.6 경북공예품대회 입선<br>'04.11 대한민국 전승공예대전 입선 |
| 제99호   | 소반장    | 이인세<br>28년생 | 1992-11-10 | '86 제11회 전승공예대전 특별상<br>'87 제12회 전승공예대전 장려상<br>'88 제13회 전승공예대전 장려상<br>'89 제14회 전승공예대전 특별상<br>'90 제15회 전승공예대전 국무총리상                                                                                | 이종덕(조교, 46세)<br>'84.9.1 전수장학생 인정<br>'89.11.30 이수자 인정<br>'02.10.7~11.17 보유자작품전 출품    |

|       |       |             |            |                                                                                                                                                                             |                                                                                                      |
|-------|-------|-------------|------------|-----------------------------------------------------------------------------------------------------------------------------------------------------------------------------|------------------------------------------------------------------------------------------------------|
| 제100호 | 옥장    | 장주원<br>37년생 | 1996-02-01 | '80 전승공예대전 입선(1980-1982)<br>'81 전국 관광민예품경진대회 전남예선 우수상(1981-1983)<br>'81.10 전국 관광민예품경진대회 특별상<br>'88.12 성옥문화상 예술대상 수상<br>'94.10.1 목포시민의상 수상                                   | 장석(조교, 45세)<br>'94 제24회 전국공예품경진대회 장려상<br>'95 제20회 전승공예대전 입선<br>'95 제23회 동아공예대전 대상                    |
| 제101호 | 금속활자장 | 오국진<br>44년생 | 1996-02-01 | '88.12.29 올림픽 기장 문화상<br>'92 석가탑'무구정광대다라니경' 복원<br>'93 '계미자', '경자자', '갑인자' 복원(청주고인쇄박물관 전시)<br>'93 한글 최초 금속활자 '월인천강지곡' 복원 및 구조법 규명<br>'94 석가탑 '다라니경' 간행 연대 규명                  | 임인호(조교, 41세)<br>'99.7.2 제25회 공예경진대회 특선<br>'00.6.30 제26회 공예경진대회 입선<br>'01.6.30 관광기념품 공예상품 기획전 장려상     |
| 제102호 | 배첩장   | 김표영<br>25년생 | 1996-03-11 | '38.7~ 청주 윤병세표구사에 입사                                                                                                                                                        | 이종훈(이수자, 46세) 외 4명<br>'97.5.1 전수장학생 선정<br>'97.6.30 이수자 선정                                            |
| 제103호 | 완초장   | 이상재<br>43년생 | 1996-05-01 | '93.7.30 제23회 전국공예품경진대회 입선<br>'94 제24회 전국공예품경진대회 특선<br>'94.6.29 제24회 경기도 공예품경진대회 특선<br>'95 제25회 인천공예품경진대회 입선<br>'95 제25회 전국공예품경진대회 장려상                                      | 유선옥(조교, 51세)<br>'97.6.9 이수자 인정<br>'04.3.20 조교 인정<br>양인숙(조교, 59세)<br>'98.6.0 이수자 인정<br>'04.3.20 조교 인정 |
| 제105호 | 사기장   | 김정옥<br>42년생 | 1996-07-01 | '83 경북공예품경진대회 입선('83,'84,'91)<br>'83 전승공예대전 입선('83,'84,'87)<br>'88 전승공예대전 특별상('88-'89)<br>'01.4.24~29 공개행사('민속사기전' 조선일보 미술관)<br>'02.10.7~11.17 보유자작품전 출품                    | 김영식(이수자, 36세) 외 2명<br>'97.5.1 전수장학생 인정<br>'02.2.28 이수자 인정                                            |
| 제106호 | 각자장   | 오옥진<br>35년생 | 1996-11-01 | '53.6.1 대통령상<br>'80.6.5 국민훈장 석류장<br>'94.11.24 자랑스러운 서울 시민상                                                                                                                  | 김각한(조교, 48세)<br>'90 국제미술대상 전서각부문 우수상 수상<br>'01 대한민국서예대전 입선<br>'04 제29회 대한민국전승공예대전 각자부문 입선            |
| 제107호 | 누비장   | 김해자<br>53년생 | 1996-12-10 | '92.1.1 제17회 전승공예대전 국무총리상<br>'00.4.12~4.18 전통 손누비와 천연 염색전<br>'02.10.7~11.17 보유자작품전 출품전<br>'02~'04 공개행사                                                                      | 김해연(이수자, 48세)<br>'97.5.1 전수장학생 인정<br>'97.6.7 이수자 인정                                                  |
| 제108호 | 목조각장  | 박찬수<br>49년생 | 1996-12-31 | '87 백만불수출탑 수상<br>'89 제14회 전승공예대전 대통령상 수상<br>'02.8.31~9.16 교토전통공예전시 "한국의 전통공예의 향기전" 시연<br>'03.10.1~7 제5회 중요무형문화재 제108호 목조각장 목아 박찬수 전승전<br>'03.10.26~11.10 해외 전시(일본 아와민족 박물관) | 양봉철(조교, 51세)<br>'80 제9회 불교미술대전 입선<br>'00 제5회 참나 종합예술대전 최우수상 수상<br>'02 중요무형문화재 목조각장 전승전 2회            |
| 제108호 | 목조각장  | 전기만<br>29년생 | 2001-12-21 | 동아대학 미술대전 공예부문 입선<br>동아일보 주최 제1회 공예대전 입선<br>'68~ 전국기능경기대회 목공예부문 심사위원                                                                                                        | 최준식(전수장학생, 48세) 외 1명<br>'98.5~ 전기만 선생 문하 입문                                                          |

|       |     |             |            |                                                                                                                                                                                             |                                                                                                        |
|-------|-----|-------------|------------|---------------------------------------------------------------------------------------------------------------------------------------------------------------------------------------------|--------------------------------------------------------------------------------------------------------|
| 제109호 | 화각장 | 이재만<br>53년생 | 1996-12-31 | '86 전승공예대전 입선<br>'90 전승공예대전 입선<br>'92 전승공예대전 장려상<br>'93 전승공예대전 문화체육부장관상 수상<br>'96 전승공예대전 문화체육부장관상 수상                                                                                        | 이종문(전수장학생, 20세)<br>'02.7.4 전수장학생 인정                                                                    |
| 제110호 | 윤도장 | 김종대<br>34년생 | 1996-12-31 | '63 전국 공예품경진대회 2등상 수상<br>'02.10.7~11.17 보유자작품전 출품<br>'03.9.30~10.5 중요무형문화재 윤도장 작품 공개 및 전시<br>'04.10.23~10.31 전남무형문화재보존회 제7회 공개전시회<br>'04.9.16~9.22 해외전시 "제4회 뉴욕 추석맞이 한민족 대축제 및 농특산물세계박람회"참가 | 김희수(이수자, 43세) 외 1명<br>'97.5.1 전수장학생 인정<br>'98.6.30 이수자 인정                                              |
| 제112호 | 주철장 | 원광식<br>42년생 | 2001-03-12 | '80년대말 전통종 제작기법(밀납주조공법) 독자 재현<br>'82 상원사 동종(국보) 등 옛 범종 다수 복원 재현<br>'02.8.31~9.16 교토전통공예전시 "한국의 전통문화의 향기전" 출품<br>'02.10.7~11.17 보유자작품전 출품                                                    | 원보현(전수장학생, 34세) 외 1명<br>'05.3.15 전수장학생 인정                                                              |
| 제113호 | 칠장  | 정수화<br>54년생 | 2001-03-12 | '85.9.18 전국공예품경진대회 상공회의소 회장상<br>'86 전승공예전 입선('86,'88,'89,'90)<br>'92.9.18 전국공예품경진대회 특선<br>'02.10.7~11.17 보유자작품전 출품<br>'03.3.19~3.25 공개행사 "심재 정수화칠예 작품전"                                     | 김후인(이수자, 40세)<br>'91 옷칠공모전 특선<br>'80~ 장안칠기 입문<br>'02.7.4~ 칠장 전수장학생 선발                                  |
| 제114호 | 염장  | 조대용<br>50년생 | 2001-06-27 | '82 제7회 전승공예대전 장려상<br>'84 제9회 전승공예대전 입선<br>'85 제10회 전승공예대전 입선<br>'90 제15회 전승공예대전 문화부장관상<br>'95 제20회 전승공예대전 대통령상                                                                             | 조영(전수장학생, 26세)<br>'02.7.4 전수장학생 인정<br>'02.8.31~9.16 교토전통공예전시 "한국의 전통문화의 향기전" 출품                        |
| 제115호 | 염색장 | 윤병운<br>21년생 | 2001-09-06 | '94 제24회 전승공예대전 입선<br>'02.10.16~20 남도천연염색 "고운빛갈전" 출품<br>'02.11.4~5 천연염색 축제 "천연염색 패션쇼 빛갈전" 출품<br>'04.10.13~10.1 나주무형문화재 4인 작품발표회                                                             | 윤대중(이수자, 40세) 외 1명<br>'03.9.5 전수장학생 인정<br>'04.10.20 이수자 인정                                             |
| 제115호 | 염색장 | 정관채<br>59년생 | 2001-09-06 | '98.11 문화관광부장관상 수상<br>'99 광주·전남 교육계를 빛낸 10인에 선정<br>'99 제24회 전승공예대전 입선·장려상 수상<br>'99 한국 신지식인으로 선정<br>'99.5 교육부장관상 수상                                                                         | 정중채(이수자, 50세) 외 1명<br>'00.10~ 나주(갯골)쪽염색 연구소 선임연구원<br>'02.5.5 전수생 등록<br>'05~현재 나주(갯골) 쪽염색공방 공방장('85~현재) |
| 제116호 | 화해장 | 황해봉<br>52년생 | 2004-02-20 | '93 제18회 전승공예대전 장려상<br>'94 서울특별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br>'94 제19회 전승공예대전 입선<br>'97 제22회 전승공예대전 특별상(문화재관리국장상)<br>'99 제24회 전승공예대전 대통령상 수상                                                              | 김미정(전수장학생, 48세) 외 1명<br>'04.10.18 전수장학생 인정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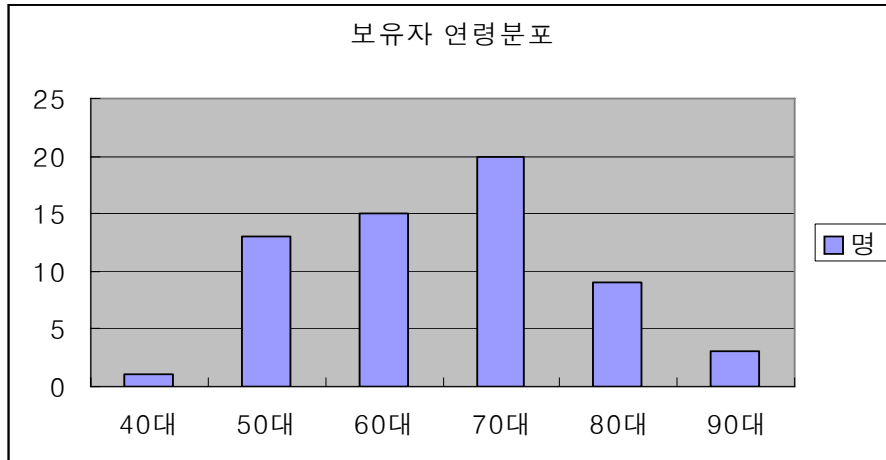
|       |     |             |                |                                                                                                                                            |                                                                                                                          |
|-------|-----|-------------|----------------|--------------------------------------------------------------------------------------------------------------------------------------------|--------------------------------------------------------------------------------------------------------------------------|
| 제117호 | 한지장 | 류행영<br>32년생 | 2005-<br>09-23 |                                                                                                                                            | 보유자가 2005년도에 인정되어 현재 이수자 양성 중                                                                                            |
| 제118호 | 불화장 | 임석환<br>48년생 | 2006-<br>01-10 | '81.10 제9회 불교미술대전 입상<br>'83.10 제8회 전승공예대전 입상<br>'84.10 제9회 전승공예대전 입상<br>'99~ 사단법인 한국문화재보존수리기능인협회 회원<br>'05~현재 樹山전통불교미술원 운영                 | 김영희(이수자, 48세) 외 32명<br>'00.10.1 제2회 성보예술제 단청·불화부문 참가<br>'01.10.17 제3회 성보예술제 단청·불화부문 참가<br>'02.10.23 제4회 성보예술제 단청·불화부문 참가 |
| 제118호 | 불화장 | 임석정<br>24년생 | 2006-<br>01-10 | '01 재단법인 행원문화재단 예술상 수상<br>'92~ 성보문화재 연구원 개원<br>'92.11.10~'06.1.10 단청장 보유자('06.1.10 불화장 보유자 인정)<br>'94~ 불교미전 심사위원<br>'95~ '한국의 불화' 간행 편집위원장 | 이경아(전수장학생, 28세) 외 1명<br>'04.10 제20회 대한민국 불교미술대전 특선<br>'04.11 제29회 전승공예대전 장려상<br>'05.11 제30회 전승공예대전 장려상                   |

## 2. 전통공예 종사경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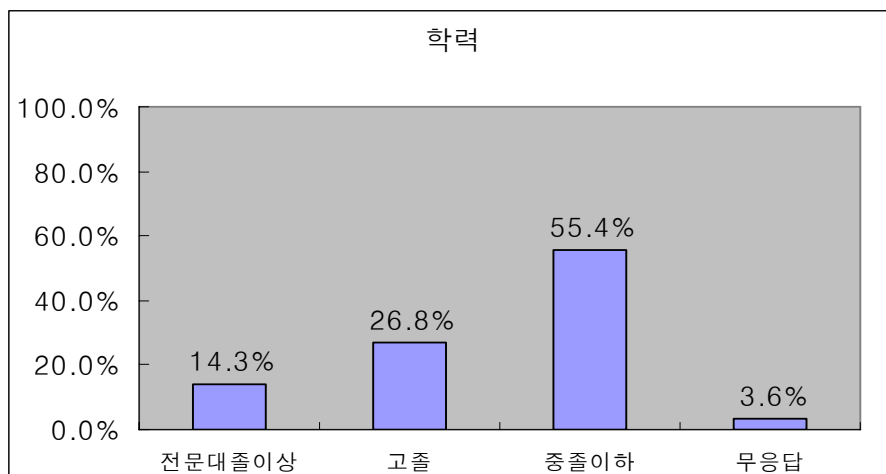
이들은 평균 48년 동안 종사해왔으며, 60년 이상도 전체의 23.2% 이상으로 평생을 우리 전통공예의 맥을 이어가기 위해 살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3. 보유자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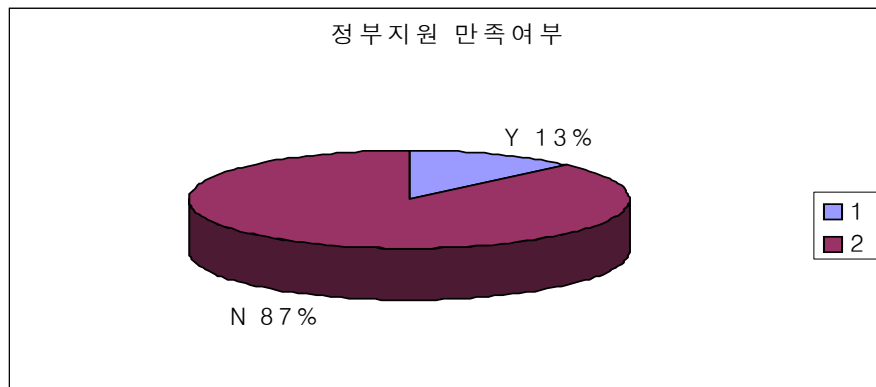
응답자의 평균연령이 70세로 나타남. 이중 50세 미만은 불과 2%였고, 70세 이상이 77%로 나타나 중요무형문화재의 고령화가 향후 대한민국 전통공예의 맥을 이어가는데 심각한 문제점으로 대두될 것으로 예측됨. 뿐만 아니라 평균 연령이 높은 관계로 이들은 의료보험 혜택지원을 가장 많이 원하고 있음. 실제로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의 경우 1종 보험으로 혜택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혜택을 받는 이들이 그 방법을 모르고 있음. 제도에 대한 홍보가 부족함을 여실히 드러내는 부분.

### 4. 학력 및 전수 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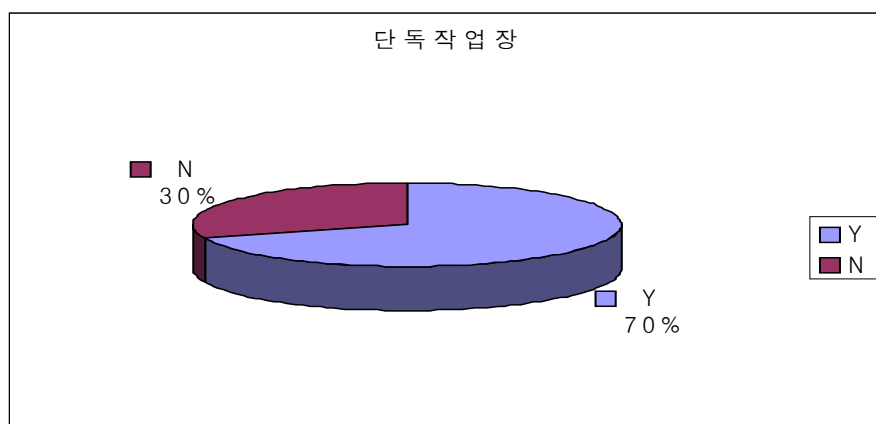
조사결과 중요무형문화재들의 55.4%가 중졸이하의 학력을 가진 것으로 드러났고, 이들의 대다수는 아버지, 엄마, 삼촌, 고모부 등 집안의 어른으로부터 고유 전통기술을 전수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 5. 현행 정부의 지원제도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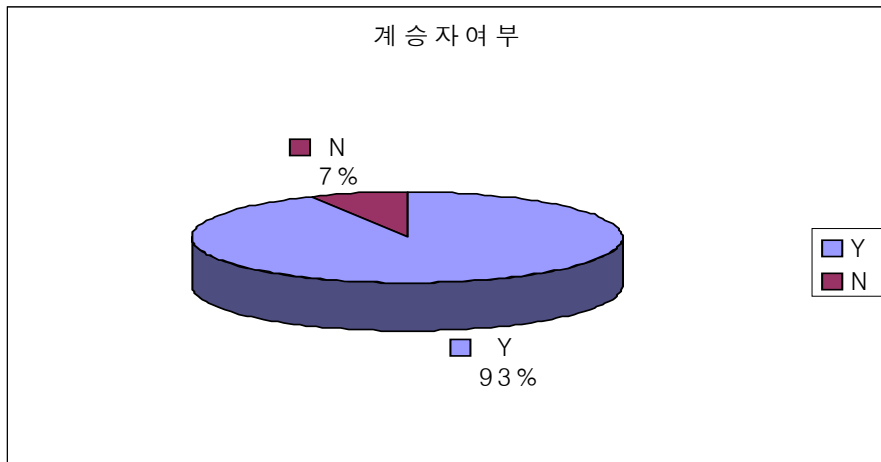
현재 정부는 문화재보호법에 의거하여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받은 자에게 대표적으로 매월 100만원의 지원금을 주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뚜렷한 정책적 대안이 없는 것이 현실임. 이로 인해 응답자의 87%가 정부의 현 지원제도에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6. 단독작업장 소유 여부



조사결과 70%가량이 작업장을 소유하고는 있지만, 앞서 인터뷰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몹시 열악한 상황.

## 7. 계승자 여부



응답자의 대다수인 93%가 전승계승자가 존재하고 있었는데, 그 이면을 살펴보면 계승자의 대부분이 아들, 딸, 사위, 조카 등 친인척인 것으로 밝혀져 영세한 가내 수공업을 벗어나지 못하는 실정이었음.

## 8. 설문 결론

전수 설문을 통해 드러난 전통공예에 종사하고 있는 중요무형문화재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는 크게 3가지로 요약된다.

- 1) 경제적인 어려움,
- 2) 전통공예품에 대한 수요가 적음,
- 3) 후계자 확보의 어려움

등이 그것이다. 향후, 이런 애로사항을 중심으로 정부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책 마련에 심혈을 기울여 우리 고유 전통의 맥이 끊기는 일이 없어야 한다.

### III. 전통공예산업의 문제

미술의 그림 또는 조각 작품은 감상과 소장 등의 목적이지만, 공예는 실용성과 예술성을 동시에 지니며, 공예품을 구입한 다음 평생을 쓰고 다음 세대에 물려줄 수도 있고, 그것이 박물관의 국보나 보물이 될 수 있는 우리 고유의 문화적 전통이다. 특히 전통공예는 민족의 정서와 지혜가 담겨있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재산이다. 이러한 전통공예는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 보호되고 있기는 하지만 문화재보호법의 원형유지 원칙으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지원 정책에도 문제가 있다. 예술원 회원, 학술원 회원 등 현대 미술 활동을 하는 작가들에게는 국가가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만 전통공예의 지원현황은 그러하지 못하다. 또한 정부의 각 부처간 지원체제의 분산으로 인하여 열악한 환경의 전통공예산업에 대한 효율적 지원이나 관리를 기대하기엔 어려운 현실이다.

그동안 전통공예산업 진흥을 위한 법안제정과 그에 따른 지원정책이 집행되어 왔으나, II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통공예 산업에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다. 그 구체적인 문제요소는 다음과 같다.

#### 1. 현행 전통공예 관련 법안의 제한적 요소

##### 1) 품질보증제도 미비

품질보증과 불량품 보상이나 교환을 위한 제도의 미흡으로 소비자들의 신뢰를 확보하기 어렵고 저질 불량 모조품이 시장 질서를 혼란시키고 있다. 예를 들면 전국 관광 상품의 70% 이상이 동남아, 중국산 저품질 상품으로 추정<sup>3)</sup>되고 있으며(인사동도 마찬가지), 더욱 심각한 일은 값싼 저품질 국적

3) 김재윤(국회의원), 2005, 「공예산업 혁신을 위한 정책제안」, 보도자료

불명의 공예상품이 우리나라 고유의 공예품인 것처럼 둔갑해 판매되고 있는 상황이다.

계속적인 불량 모조품이 시장 질서를 혼란시킨다면 소비자들로 하여금 공예품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멀리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 2)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및 지원책의 문제

### 가. 전문위원의 부재에 따른 문제

현재의 전문위원이나 위원회의 구성은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몇몇 사람의 전문위원과 위원들의 의견만으로(또는 해당분야의 전문가가 아닌 기타 전문위원들만이 위촉되어 심사를 할 경우) 중요한 무형문화재가 지정되고 있기 때문에, 해당분야의 전문적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항상 문제의 씨앗을 안고 있다.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이정훈 사무관)에서 2006년 7월에 실시한 「무형문화재 제도개선 관계전문가 의견 수렴결과」를 살펴보면, 무형문화재 심사 전문위원 구성의 개선방안에 대한 개선책들에서 전문위원의 부재를 꼬집어 얘기하고 있다. 전문위원의 부재는 무형문화재의 원형보전과 발전에 큰 차질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 나. 관리소홀에 따른 지원책의 문제

무형문화재 보전과 발전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종목이 무엇인지를 선별한 다음 전문가들의 추천을 받아 지정해야 한다. 특히 전승 단절될 우려가 있는 종목은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보유자 및 전통계승자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종목 단절이 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예를 들어 공예부문의 16개 부분<sup>4)</sup>

4) 전수교육조교가 없는 공예 종목: 낙죽장, 두석장, 제와장, 전통장, 배첩장, 사기장, 누비장, 화각장, 윤도장, 주철장, 칠장, 염장, 염색장, 화해장, 한지장, 바디장 (이상 16개 종목).

에서 전수교육조교가 없으며, 침선장과 옹기장 분야에는 보유자가 없는 상황이다.

또한, 현재 무형문화재에 지원되는 보조금은 일반인들의 소득수준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며, 무형문화재 보유자도 생계유지와 전통공예의 기술보전에만 급급할 정도로 열악하다.

무형문화재에 대한 지원책의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무형문화재는 중요무형문화재와 지방무형문화재로 분류되며, 그 중 지방문화재는 중앙정부의 지원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다. 지방무형문화재의 소재파악도 안되는 지방무형문화재 관리의 현실에서 지방무형문화재의 어려움은 당연한 결과이다.

### 3) 정부 지원책의 문제

#### 가. 지정 및 지원의 문제

현재 지정된 중요·지방문화재는 단절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왜냐하면, 정부의 무형문화재 지정 및 지원에 통일성이 없었고, 편향적인 지원체제로 인해 적절한 지원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지정에서 인기종목엔 많은 보유자가 있지만, 비인기 종목엔 한 종목도 보유자 지정이 되지 못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인기종목인 대목장(3명), 목조각장(3명), 단청장(4명), 유기장(3명) 등 보유자가 한 종목에 3~4명 지정되는 종목이 많은 반면, 비인기 종목인 백골(栢槽), 선장(조선), 대검, 창호, 한복 등은 보유자가 한명도 지정되지 않았다. 더욱이 비인기 종목이 보유자 지정마저 되지 않아 정부의 지원이 없다면, 후계자의 계승 문제는 필연적으로 발생하여 악순환이 야기될 것이다.

현 지원의 상황을 보면, 상여장, 대목장, 연관장에는 100만원의 지원금이, 시도무형문화재는 60~90만원 정도 지급되고 있으나, 지자체별 일관된 기준이 없는 상황이다<sup>5)</sup>. 이렇게 형평성과 통일성 없는 지원이 계속된다면 단절 우려가 있는 종목분야가 더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따라서 정부는 형평성과 통일성 있는 제도를 수립하여 무형문화재를 지정하고 그에 따라 지원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인기종목과 비인기 종목, 생업형과 비생업형으로 나누어 지급을 할 수 있는 규정 및 제도의 도입은, 단절 우려가 있는 위험으로부터의 구원할 수 있는 기초적인 제도가 될 수 있다고 관계전문가들은 의견을 제시 한다<sup>6)</sup>.

## 나. 통계자료의 미비

오늘날 통계자료는 모든 분야에 중요한 기초 데이터로서의 역할과 의미를 지니고 있다. 특히 현대 산업분야는 통계자료 없이 사업이 전개가 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사업의 효율적 관리 및 최적화, 사업의 확장 및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통계자료가 활용되어야 한다.

국내 공예산업을 위한 통계자료 현황은 어떠한가? 공예산업진흥정책을 위한 기초 자료는 2000년 문화관광부와 2004년, 2005년 한국공예문화진흥원의 실태조사가 전부인 만큼 미흡하다. 따라서 기초적 통계자료의 생산이 절실한 형편이다. 공예 전 분야의 통계자료는 정부의 정책 수립과 집행에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데이터와 전략을 수립해 줄 것이다.

---

5) 박찬수, 「중요무형문화재와 공예정책에 대하여」, p17

6) 이정훈(사무관), 2006년 7월, 무형문화재 제도개선 관계전문가 의견수렴 결과,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 2. 전통공예산업 유통구조의 문제

### 1) 수요예측 불가능

2005년 공예업체의 매출액이 평균 9,900만원 수준이어서 시장수요와 주문량이 미미하며, 그동안 공예품에 대한 시장규모와 정확한 유통 흐름에 대한 통계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수요를 예측하여 판매계획을 세우는데 어려움이 있다.

### 2) 전 근대적인 유통구조

제품은 생산을 거쳐 도매상, 소매상, 소비자의 순으로 유통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 유통의 경로에는 유통업체들의 전문적인 인프라가 구축되어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2000년 문화관광부가 내놓은 「전통공예문화상품을 위한 제작·유통 실태조사」에 따르면, 유통만을 전업으로 하는 사업체는 비중이 45.0%에 이르며 제작과 유통을 겸하는 사업체는 29.3%에 이른다. 이와 같은 현실은 유통체계의 비효율성, 유통인프라 부족, 혁신적 마케팅 개발의 노력 부족 등을 의미하며, 전통공예산업의 유통이 지니고 있는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체계적인 유통의 인프라가 형성되지 않아 많은 전통공예인들은 직접 소비자에게 전통공예품을 판매하거나 인터넷쇼핑몰, 홈쇼핑, 우체국 등을 통해 판매하기 때문에 중간 상인인 도·소매상이 형성될 수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은 전통공예품의 가격 정책의 문제점과도 연결이 된다. 체계적인 유통의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전통공예가들의 주먹구구식, 특히 원자재 구입 가격에 따라 전통공예품의 가격이 들쭉날쭉하므로 이유 있고 체계적인 가격정책과 가격책정의 안정화가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정부의 지원은 가격책정의 안정화를 이룰 수 있다. 또한 일부 특정지역 내의 전통공예상품은 부가가치세나 각종 세금이 면세되고 있는 등 형평성에 어긋나는 행태

가 이어지고 있어 체계적인 유통관리가 필요하다.

전통공예의 유통산업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본을 살펴보자. 일본은 백화점, 유통회사 등으로부터의 주문은 절대 개인공방에서 취급하지 않고 조합이나 협회에서 일괄 주문을 받아 조합원(제조사)들에게 균등배분하거나 견본 제작자들에게 우선으로 배정한다. 따라서 제조자들은 판매, 수금 등에 대한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 완벽한 제품만 만들면 되기 때문이다. 또한 협회에서는 공급되는 모든 공예품에 표식을 부착한다. 이때 협회에서는 제조자들에게 주문량이 가는 것만큼 인건비, 재료비를 선수금으로 지급하여 제작자들의 운영에 협조해주고 있다. 오늘날 일본의 전통공예산업이 세계시장에서 최고급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고 있는 것이다.

### 3) 포장, 운송비용 부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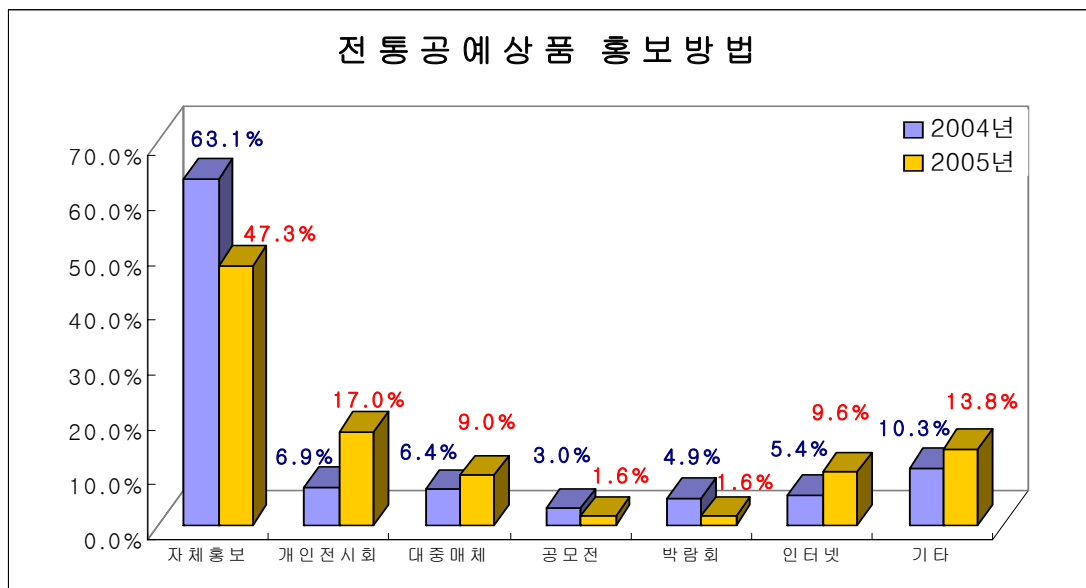
전통공예품은 종류와 규격이 다양하여 포장과 운송에 상대적으로 높은 비용이 들고 어렵다. 만약 체계적인 유통 인프라가 확립되어 유통관리가 이루어진다면 운송비용에 대한 해결책이 나올 것임에 틀림이 없다.

### 4) 국내외 홍보망 부족

전통공예상품 홍보에 대한 인식이 낮다. 그 결과 해외홍보 및 판매조직망이 형성되어 있지 않아서 해외마케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영세한 대부분의 생산업체들이 자체마케팅에 의존하는 비율(2004년 63.1%, 2005년 47.3%)이 높으며, 판매 및 유통을 위한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아서 유통구조가 낙후된 상태이다. 특히 2005년에 눈에 띄는 홍보방법의 변화 중 인터넷의 활용을 들 수 있다. 2004년도에 인터넷 홍보가 5.4% 이었으나 2005년도에는 9.6%로 상승한 것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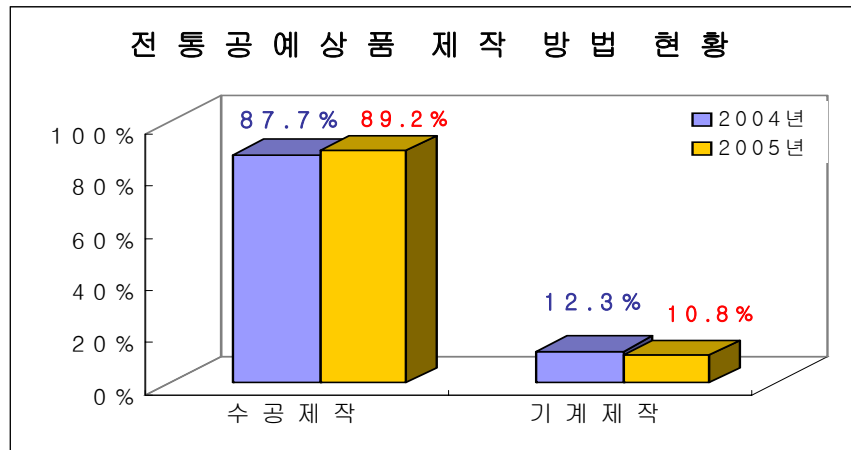
세계의 유통업 흐름을 보더라도 인터넷을 이용한 자국내외의 홍보 및 유통은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전통공예산업의 인터넷을 통한 유통 체계는 다른 업종의 유통시스템과는 비교가 될 정도로 뒤떨어져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미래 유통의 중심이 되는 인터넷의 인프라 구축과 그에 따르는 유통 시스템 구축은 현실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구축을 위한 지원과 전문적인 사업체가 절실히 필요하다.



### 3. 전통공예산업의 문제: 제작

#### 1) 제작과 자본의 영세성: 경영난과 전통공예제작의 장소문제

전통공예 관련 사업체는 2005년 기준 개인사업체가 90.3%, 수공제작이 89.2%를 차지하고 있는 등 영세하며 담보능력이 부족하여 자본 조달이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경영난은 물론 상품개발도 어려운 실정이다.



### “공방” vs “공장”

전통공예문화의 발전을 위해서는 전시판매장, 제작소, 재료실, 기숙사 등 일정규모의 공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도심지에서는 이러한 장소를 갖추기란 쉬운 일이 아니며, 더구나 전통공예업체 90.3%의 영세한 개인사업체에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일이다.

전통공예제작을 위해서는 작품 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다. 교육생들의 공간 역시 필요하다. 새로운 상품개발을 하여 소비자들의 반응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전시 및 판매할 수 있는 장소 역시 필요하다. 이러한 공간은 공예의 맥을 이어가는 중요한 장소가 되며, 동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호흡을 같이 할 수 있는 장소로서의 의미를 지닐 수 있다. 그렇기에 공예인들이 작품 활동을 하는 곳은 제조를 하는 장소인 “공장”이라는 개념이 아닌 “공방”으로 생각해야 하는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작품의 활동을 왕성히 할 수 있는 장소를 공예인들에게 제공해야 하며, 그를 통해 동시대의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공예를 나눌 수 있는 장소를 반드시 제공해야 할 것이다.

## 2) 원, 부자재 조달의 어려움

자재의 종류가 다양하여 적기에 확보하기가 어렵고, 한개 업체의 조달물량이 적어 단가 상승의 위험이 있고, 천연원자재는 장기 비축하기가 어렵다. 또한 자재의 표준화가 이루어져 있지 않아서 범용 자재와 호환성이 없다.

따라서 원, 부자재의 조달을 체계적으로 담당할 기관 또는 단체가 필요하다. 이러한 기관 및 단체를 통하여 공예인들은 그들의 작품 활동에 많은 도움을 받을 것이다

## 3) 전문 인력의 부족

II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예업체당 제작 인력이 1명 이하가 약 52%, 2명 이하가 20.3%, 3~5명이 20.8%의 상황이며, 이는 작업환경과 임금체계가 열악하여 전업과 전수를 기피함으로써 숙련된 생산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 후계자 확보의 어려움

전통공예의 후계자 확보의 어려움은 전통공예를 통하여 생계유지 및 생활의 안정화를 이룰 수 없다는 곳에서 비롯된다. 물론 인기 있는 종목들의 후계자 확보는 어려움이 없다. 이는 II장에서 보시는 바처럼 본 의원실에서 중요무형문화재에게 전수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비롯해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이정훈 사무관)에서 2006년 7월에 실시한 「무형문화재 제도개선 관계 전문가 의견 수렴결과」 및 「공예부문 무형문화유산 전승실태 모니터링 실시내역」을 살펴보면 이수자 선정의 문제와 교육생들에게의 지원에 대한 문제점들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현행법상 공예업체가 제조업이므로 공예업체에서 후계자와의 관계가

공예전수의 의미를 지닌 “스승과 제자”의 관계보다 “고용인과 고용주”의 성격을 띠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영세수공업업주로서는 교육생에게 갑근세, 의료보험, 산재보험 등 지불해야하는 경제적 부담이 발생하므로 경영의 어려움 및 후계자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통공예의 업체, 보유자, 후계자 등이 생계의 어려움을 벗어나지 못하는 한 후계자 확보의 어려움은 해결되지 못할 것이다.

#### 4) 관광 상품과 연계프로그램 부족 및 지역 대표상품의 부재

지역별로 특화된 고유한 향토적 공예상품을 개발하여 관광과 연계하는 프로그램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지역을 대표하는 특화된 공예상품이 미흡하여 지역 관광 상품화를 통한 지역 문화이미지 형성이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을 대표하는 고유한 공예상품을 개발하며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기관 및 단체 등이 절실히 필요하다.

## IV. 외국의 전통공예산업 현황

### 1. 일 본: 전통 공예품 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책

일본은 1974년(2001년 개정) “전통적 공예품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전산법:伝産法)을 제정해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전통적 공예품 산업을 육성함으로써 국민생활에 풍요로움과 윤택함을 주는 동시에 전통적 기술·기법의 전승이나 지역경제 발전, 고용창출에 이바지한다는 목적을 갖고 있다.

일본은 산업진흥 사업 모델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전통적 공예품을 PR하고 전통브랜드를 확립함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전통산업의 생산에 불가결한 용구나 원재료의 공급 체제에 관해 로드맵을 작성하고 장기적인 생산체제 기반 정비와 조사, 관리를 시행하고 있다.

전통적 공예품은 전산법에 의거, 지원계획에 근거한 각종 사업 등에 대해서는 사업비의 50%를 보조한다. 전통적 공예품의 기술·기법의 계승, 향상을 위해 전통 공예사 인정사업, 공로자 포상사업, 전통적 공예체험 및 교류사업을 비롯 IT를 활용한 전통적 공예품 활성화(포털사이트, 쇼핑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정된 전통공예품을 한 장소에 모은 유일의 전시회장으로서 상설 전시회 및 특별전시회를 개최하고 있고, 여기에 정보 제공과 공예품 클리닉을 제공하는 등 소비자와 교류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 2. 중 국: 공예품 국가 인증제도와 모방방지 강화

공예품 산업관련 법규는 공예품 수출입을 비롯해 생산, 가공, 판매 등 공예품 산업 전반에 걸친 주요 정책을 포괄하고 있다. 각 지방의 법규정책은 현지 공예 미술업계의 보호 및 현지 관광업의 발전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절강성에서는 전통공예 미술품과 그 수공기법에 대해 국가 인증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전통공예 미술로 인정된 공예품과 그 기법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문서화하여 보관하거나 모방 방지를 위한 보호 조치를 취하고 있다. 또한 공예품의 계승, 보호, 발전에 공헌한 기업과 개인에게는 국가에서 그 공로를 표창, 장려하고 있다. 또한 절강성은 주요 전통공예품 보호를 위해 기금을 마련·운영하고 있으며, 우수 인재를 양성하는데도 힘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광둥성에서는 작품에 본인의 이름을 명시하거나 사적인 표식을 부착할 수 있다. 또한 현지 상황에 맞게 전통 공예 미술보호를 위한 기관이나 연구소 등을 건립할 수 있다. 학술 교류, 창업 지원, 우수한 기업이나 개인에게는 표창과 상금도 주어진다. 특히 광둥성은 전통 수공예 발전과 보호를 위해 전통공예품의 생산, 경영, 전시를 하나로 관광사업과 연계하는 ‘美城 민간예술 백공당’을 건립할 예정이다.

### 3. 영 국: 세계를 향한 공예산업 활성화 방안 추진

영국공예청은 처음 시작하거나 3년 이하의 활동을 한 작가에게 최고 수천 파운드를 지원하여 자신의 비즈니스를 펼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주고 있다. 또한 공예품을 뉴스, 신문, 방송에 홍보를 해주고, 각종 지원책과 박람회 진출을 유도하며, 공예대학(원)에도 지원금을 제공해주고 있다.

특히 영국공예청의 지원을 받은 공예가들의 사업은 4년 후에도 건재하며, 6년 후 50%, 20년 후 60%의 높은 지속률을 보이고 있다. 이 수치는 5년 후 30%, 10년 후 10%의 사업 지속률을 보이는 영국 내 중소기업들과 비교하면 월등한 수준이다. 뿐만 아니라 영국공예청은 원하는 작가들로 하여금 자신의 디테일을 등록케 하여 전시, 판매, 커미션을 원하는 숍, 갤러리, 바이어들에게 제공해준다. 실제 영국공

예청은 일년에 두 번 뉴스레터를 제작하여 세계 전역의 잠재 바이어들에게 사업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우편으로 발송한다. 현재 영국공예청에는 4,000명이 넘는 공예작가들이 등록해 있으며, 45,000개가 넘는 공예품 사진들이 Photostore@라는 온라인 비주얼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바이어, 큐레이터, 일반인들에게 공개된다.

#### 4. 프랑스: 공예기업에 대한 지원제도 활발

프랑스 공예부문 업체들은 대부분 고용인 10인 미만의 중소기업이며, 2/3 정도는 1인 기업으로 봐야 한다. 따라서 작가 지원제도와 업체 지원제도의 구분은 없으며, 중소기업 지원제도가 곧 공예산업 지원제도로 이해될 수 있다.

특히 프랑스는 은행융자, 장려금, 실업자 창업지원 프로그램 등을 개설해 공예관련 창업을 지원해 주고 있으며 수혜 건수만도 68,000여개에 달한다. 더욱이 공예법 관련 인력 개발 및 고용촉진 지원정책에 따르면, 고용장려금 지급, 사회보장비용 면제, 계약직 채용 지원금 등을 포함해 총 355,000여건, 총 200만 유로에 달하는 혜택을 주고 있다.

#### 5. 이탈리아: 고유 공예산업 보호에 확고한 의지

헌법에 “이탈리아는 고유의 공예산업을 보호 육성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을 만큼 정부의 공예산업에 대한 보호 의지가 확고하다.

이탈리아는 헌법상에 명시된 지방정부의 공예산업 보호·육성 권한에 의거, 지역상공회의소에 등록된 작가 및 관련 업체들에 각종 지원제도를 실시한다. 1) 판매지원, 2) IT지원, 3)기술개발촉진, 4)재정지원 등으로 구분되며 지원횟수와 금액은 해당 지자체의 당해연도 재정사정, 기부금에 따라 결정된다.

판로개척은 지방정부가 담당한다. 예를 들어, 전통적인 유리공예 산지인 베네치아의 경우, 1934년부터 전문유통인 양성프로그램을 운영, 매년 2회에 걸쳐 45명씩 전문가를 배출하고 있다. 양성된 인력들은 유리공예품 공방 및 매장이 집중해 있는 무라노 섬에서 활동하고 있다.

Lombardia주는 EU의 ESF(Europe Social Fund)를 유치하여 바이올린 및 기타 악기 제작자 양성지원금으로 학비의 95%를 지원하고, 원부자재의 경우 바이올린 제작에 필요한 구입비용은 무제한, 일반악기는 구입비용의 40%를 지원한다. 또한 바이올린 박물관(Violin Collection in Palazzo Comunale)과 연계하여 바이올린 제작자의 작품 전시 및 공동판매를 시행한다.

정부는 주력 공예산업인 도자기 부분에도 집중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특히 국제세라믹박물관(Museo Interazionale delle Ceramiche)과 결합하여 상품전시 및 판매에 이르기까지 적극 지원해주며,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로 이어지는 작가들의 작품 및 역사물 전시와 홍보를 담당한다.

## 6. 스페인: 법령 발효, 공예에 대한 다양한 지원

“공예분야의 근대화와 발전을 위해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헌법 130조 1항)  
“각 지자체는 공예산업에 대한 권한을 취한다.”(헌법 148조 1항 14조) 는 법령이 제정될 만큼, 스페인 정부는 공예에 대한 다양한 지원과 보호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스페인은 중앙정부 차원보다 지방정부의 공예산업 정책이 활성화되고 있다. 특히 스페인 지방 자치단체의 공예산업 정책은 ‘규제’ 아닌 ‘장려’라는 측면에서 공예산업진흥, 공예시장 확대, 지속적이고 구조적인 공예산업 개혁방안 창출이라는 목표를 갖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중 가장 중요한 정책은 바로 ‘보조금 제도’이다.

스페인에서는 특히 공예명부에 '개인공예가', '기업에 속한 공예가', '장인', '명예 장인', '공예단체'로 나누어 등재하며 공예산업 진흥 및 정책적 관리의 기본자료로 활용한다.

개인 보조금의 경우 공방의 효율성을 높이고 새로운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공방의 현대화 지원 및 시장 판로 확대를 위한 정보화(인터넷) 지원, 공예산업의 저변확대를 위한 각종 강좌 및 프로젝트 지원보조금, 원재료 공동구매 지원과 공예품 판로개척을 위한 카탈로그 제작 그리고 광고비 지원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 7. 미 국: 저작권법에 따른 법률적 보호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포괄적인 지적재산 보호 법률을 제공한다. 공예작가에 대한 예우도 마찬가지. 1990년 미국은 인디언예술 및 공예품법을 제도화함으로써 예술인, 문화, 공예품을 보호하고 있다. 1)작가의 수명에 50년을 더한 기간을 최소 저작권 기간으로 제공한다, 2)저작권 고시 또는 등록 없이도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다, 3)작가가 자신의 상품의 왜곡 또는 기타 수정을 방지할 수 있는 도덕적 권한을 부여한다,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미국정부에서 공예 분야에 지급하는 보조금은 연방정부 기관 NEA(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에서 관장하고 있다. NEA는 공예품뿐 아니라 전반적인 예술 분야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직접 지원하는 제도와 주정부를 통해 지급하는 간접 지원제도가 있다. 1965년~2003년까지 NEA는 12만 건의 보조금을 지원한 바 있으며, 연간 예산은 1990년대 1억 달러에서 최근 2004년부터는 NEA의 예산이 1.21억 달러로 증가하는 등 예술가 및 공예작가에 대한 활발한 지원활동을 벌이고 있다.

## 8. 태 국: 전통공예 발전시켜 고용창출과 부수입

태국 정부는 펀드 조성, 사업 컨설팅, 마케팅 전략수립, 포장 및 디자인 개발, 인적 자원관리 등을 통해 작가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Bangasi Arts & Crafts Center나 Thai Craft Institute 등의 전문 인력 양성 기관 운영을 통해 노하우나 기술 등의 지식을 전파, 공유, 보존하고 있다.

태국정부는 공예품 중장기 마케팅 계획을 수립하여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전략 기지를 선정하고 업체의 제품 판매도 지원하고 있다.

- 1) 시민단체의 개입 유도 2)제품 생산공정을 최적화하여 제품의 가치 증대 3) 마케팅 홍보 강화 4) 인터넷 네트워킹 강화 5) 재무 자원 및 대외관계 지원 6) 문화관광지 및 고대유적지의 관광객 유치 강화 7) 대중 캠페인 등 관계마케팅 강화 8) 사후 관리 및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 V. 전통공예 진흥정책의 방향과 과제

- ① 전통공예의 전승, 보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전통공예가" 지정
- ② 전통공예가로 하여금 그 기능에 대한 전수교육이 가능케 하며 전수받는 자에게 장학금 지원
- ③ 전통공예품, 우수전통공예품의 지정
- ④ 전통공예가를 위한 작품 활동의 장(전시장, 학술대회, 국제박람회) 지정 및 지원
- ⑤ 전통공예산업의 진흥 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전문인력양성, 재교육 지원, 보급 및 홍보사업을 행하는 한국전통공예산업 진흥센터 조성
- ⑥ 전통공예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와 문화상품 제작과 개발을 위한 전통공예산업단지 조성
- ⑦ 전통공예산업 관련사업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전통공예촌 지정

Ⅲ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행 전통공예 관련법안의 미비점과 부적절한 시행으로부터 야기되는 문제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 할 수 있다.

중요무형문화재 지정과 지원의 문제, 후계자 계승 및 교육지원의 문제, 전통공예인들의 경제적 어려움, 전통공예품의 품질의 문제와 원자재 조달의 어려움, 그리고 전통공예산업을 위한 유통과 마케팅 문제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위에 열거한 문제들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단순히 어느 한쪽의 문제만 해결한다고 해서 전통공예에 뿌리 깊은 문제들을 해결 할 수는 없다.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근본적이고 전반적인 대안들이 제시되고 실행되어야 한다.

### 1. 전통공예가 지정

「문화재보호법」상의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제도는 전통공예 기술 중 보존가치가 있는 일부 공예기술에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공예기술의 “원형보존”이라는 한계를 벗어나 전통공예를 경제적·산업적 관점에서 육성하고 진흥할 필요성이 요구된다.

전통공예의 계승, 발전과 전통공예 기능인의 명예를 위하여 전통공예가의 지정이 필요하다. 전통공예가의 지정은 전통공예의 전승 및 발전을 위함이며, 지속적인 활동을 독려하는 의미를 가진다. 전통공예가의 지정 및 지원은, 그동안 야기되었던 중요무형문화재 지정(인정)의 편중됨과 중복의 불합리성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다.

## 2. 전통공예가 등에 대한 지원 및 교육생 지원

계승보유자의 후계자 확보의 어려움은 전통공예를 통한 생계유지 및 생활의 안정화를 이룰 수 없다는 점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전통공예의 전승, 보전을 위하여 행해지는 공예가들에 대한 전시회 및 판매지원과 후계자들을 위한 보조금, 장학금 등을 지원해 줌으로써 기존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다.

## 3. 전통공예품, 우수전통공예품의 지정

05년 한국공예진흥원의 자료에 따르면, 소비자 집단(인사동)이 공예상품의 품질수준(20.6%)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였고 공예품의 신뢰성(13.0%) 및 구매 후 서비스(6.5%)를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특히 공예인증마크를 표시할 경우 공예 문화관광상품 구매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답변으로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56.3%), 매우도움이 된다(11.7%), 보통이다(23.3%)”의 답변을 하였다. 이는 소비자들이 믿을 만한 전통공예품 구입을 원하는 것이며, 품질인증에 대한 욕구를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공예품의 품질이 인증될 때 공예산업의 진흥은 더욱 활발히 진행될 것이다.

## 4. 전시장 및 학술대회, 국제박람회 지정 및 지원

전시시연회, 학술대회, 국제박람회 등 전통공예 전시행사를 지원하고, 전통공예품 전시판매장 또는 전시판매센터 건립을 통한 다양한 지원은 전통공예가들에게 활력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 5. 한국전통공예산업 진흥센터 조성

전통공예산업의 경제적 부가가치와 성장잠재력을 고려할 때, 전통공예산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조직 신설이 필요하다. 그동안 전통공예는 적극적인 공예산업의 형태로서 발전하지 못하였다. 왜냐하면 전통공예산업에 대한 정책 수립, 보급 및 육성을 위한 홍보활동, 인터넷 관련 운영사업, 전통문예문화 조사 및 연구, 응용기술의 개발 및 지원에 대한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전통공예산업의 발전을 효율적으로 불러일으키기 위해서는 정책의 수립과 개발, 홍보활동, 재교육 및 응용기술의 개발 등을 지원해줄 전통공예산업진흥 센터를 조성하여야 한다.

## 6. 전통공예산업단지 조성

기업, 대학, 연구소, 개인 등이 공동으로 전통공예산업과 관련한 연구개발, 기술훈련, 정보교류, 공동제작 등을 할 수 있도록 토지, 건물, 시설이 갖추어진 전통공예산업단지의 조성이 요구된다.

## 7. 전통공예촌 지정

전통공예산업 관련 사업자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인 “전통공예촌”의 지정이 필요하다. “전통공예촌”은 중요무형문화재, 명장, 국가 지정 기능보유자, 또는 전수자는 아니지만 전통공예 분야에 일정한 자격을 갖춘 전통공예 전문가 등의 공동 공방(工房) 형태의 단지를 조성하는 것이다. 따라서 “전통공예촌”에 상설전시관(박물관), 작업공간 및 전수생 교육공간, 공예품 판매장, 홍보 및 유통 기능을 담당하는 홍보공간, “민박촌”, “향토음식점 설치운영”, “원·부자재 재배 및 가공 시설 설치” 등을 집적함으로써, 개인공방 위주의 열악한 제작환경과 전근대적인 유통 및 마케팅 구조의 개선, 관광객 유치 증대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VI. 결론

세계는 지금 문화산업을 국가의 전략적 산업으로 키우고 있다. 그 중 전통공예품은 독특한 디자인과 실용성, 상징성 및 예술성까지 겸비하고 있어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인식되고 있다. 외국별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각 국가마다 문화사업의 첨병으로 떠오른 전통공예에 대해 다각적인 진흥정책을 펼치고 있다.

‘한류 열풍’으로 주목받는 한국의 TV드라마(궁, 대장금 등)와 영화, 음악 등은 오랜 전통문화의 뿌리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다. 가장 한국적인 문화가 최고의 경쟁력을 갖게 되는 것이다. 더욱이 세계인들이 관심을 갖고 극찬하고 있는 전통공예를 더욱 발전시켜야만 국가경쟁력은 물론 21세기 문화강국의 자부심을 온 누리에 펼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전통공예를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보호하고 있지만 일부 종목 위주의 계승과 보호에만 치중하고 있다.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고 소극적인 전략으로 전통공예에 대한 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형편이다. 또한 전통공예에 대한 홍보 부족으로 국민들의 인식도 낮은 편이어서, 문화산업으로서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전통공예의 맥이 끊길 처지에 놓여있다. 더구나 제도적 미비와 사회적 인식의 결여를 틈타 동남아산 저질 전통공예 모조품이 성행하여 시장질서의 혼란까지 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 신뢰 및 국제적인 경쟁력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이제는 전통공예의 단순 원형보존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예의 의미인 실용성과 예술성을 위하여 기술 보전과 산업적 활용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효과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이 다각도로 모색되어야 한다.

주먹구구식 행정처리로 일관했던 지금까지의 관행은 청산하고,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전통공예산업진흥 정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이를 토대로 전통공예를 한 차원 발전·승화시키는 것은 국가이미지 제고는 물론 엄청난 국가수익 창출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 전통공예분야가 어렵더라도 국가나 사회가 전폭적인 지지를 함으로써 전통공예산업이 국내외적으로 성공한다면 얼마나 보람되고 가치 있는 일인가! 이것이 바로 전통공예를 위하고, 나아가 국가와 민족을 위하는 길이 될 것이다.

전통공예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국민이 자랑하고 세계가 인정하는 전통공예의 부활을 위해 하루빨리 관계법령을 제정하고, 피부에 와 닿는 실질적이면서 속 시원한 지원책이 나와 주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다.

현재, 국회 문광위에는 여야 의원 26명이 지난 3월 13일 발의한 「전통공예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 9월 20일 전체회의에 상정된 후 현재는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되어 심도 깊은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우리 전통공예의 맥을 이어가는데 동료의원들의 많은 관심과 국민들의 뜨거운 성원으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좋은 결실이 있기를 기대해 본다.

# 전통공예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안

## (박찬숙 의원 대표발의)

|          |  |
|----------|--|
| 의안<br>번호 |  |
|----------|--|

발의연월일 : 2006. 3. 13 .

발 의 자 : 박찬숙 · 김재원 · 박세환  
유기준 · 이계경 · 안상수  
김명주 · 엄호성 · 정병국  
김성곤 · 이강두 · 이인기  
황우여 · 서병수 · 공성진  
이한구 · 윤두환 · 박성범  
안명옥 · 김석준 · 김용갑  
박찬석 · 나경원 · 김영숙  
김문수 · 정희수 의원  
(26인)

### 제안이유

공예는 실용성과 예술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으며, 특히 전통공예는 민족의 정서와 지혜가 함축된 문화적 전통임과 동시에 문화적 요소가 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의 요청에 부응할 수 있는 국제적 경쟁력을 가진 잠재요소임.

세계 각국도 문화산업의 시대를 맞이하여 문화산업을 전략적 산업으로 인정하고 진흥정책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으며 공예도 고부가가치를 지닌 문화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는 인식과 더불어 공예의 산업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일본의 경우 이미 1974년

‘전통적 공예품 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국가 차원에서 전통공예 산업의 진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현재 우리나라는 전통공예를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보호하고 있지만 그나마 일부 종목 위주의 계승과 보호에 치중되어 있고, 제도적 장치는 매우 소극적이고 미약한 실정으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전통공예에 대한 개인적·사회적 인식도 매우 낮은 편으로 인기없는 전통공예의 경우 전수자마저 사라져 전통공예의 맥이 끊어질 위기에 처해 있음.

또한 제도적 미비 및 사회적 인식의 결여 등의 이유로 외국산 값싼 저질의 전통공예 불법모조물이 성행함에 따라 시장질서 혼란 뿐 아니라 소비자의 신뢰 및 국제적 신뢰를 상실할 우려가 매우 크다 할 수 있음.

특히 한류열풍으로 전통공예에 대한 외국인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음에 따라 전통공예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적극적 진흥정책에 따른 전통공예 관련 법 제정이 절실한 실정임.

이에 전통공예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 제정을 통하여 전통공예의 기술보전과 산업적 활용을 효과적으로 실천하여 국가의 경쟁력 확보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전통공예와 관련된 산업 등을 포함한, 전통공예품의 기획·개발·제작·생산·유통·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행하는 산업을 전통공예산업이라 정의함(안 제2조제1호 신설).
- 나. 전통공예의 문화적 요소가 체화되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지정을 받은 제품을 전통공예품이라 정의함(안 제2조제2호 신설).
- 다. 문화관광부장관은 전통공예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전통공예산업정책을 총괄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 신설).
- 라. 매년 전통공예산업 진흥에 관한 시책과 동향에 대한 보고서를 정기국회개시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 신설).
- 마. 문화관광부장관은 전통공예산업에 관한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7조 신설).
- 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 또는 등록된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전통공예산업 등을 하여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문화관광부장관으로부터 당해 회사의 전통공예산업에 대한 투자분의 인정을 받도록 규정함(안 제8조 신설).
- 사. 문화관광부장관은 전통공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수전

통공예품의 제작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작자에게 소요자금을 융자하거나 그 밖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0조 신설).

아. 정부는 전통공예품의 유통활성화 및 유통정보화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통공예품에 국제표준바코드를 표시할 수 있고, 문화관광부장관은 전통공예품의 품질확보 및 유통촉진을 위하여 전통공예품에 관한 품질인증을 장려하고 이에 필요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으며, 전통공예품의 품질인증을 실시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1조 신설).

자. 전통공예품의 유통과 관련하여 공동구매와 공동판매시설의 운영 등의 사업을 하는 회사로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함(안 제12조 신설).

차. 문화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전통공예산업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통공예품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된 전통공예품은 관보에 고시하도록 규정함(안 제13조제1항·제2항 신설).

카.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통공예품 중 우수전통공예품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을 받은 당해 제품에 대하여는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

사로부터 우수전통공예품으로 지정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부착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3조제3항·제4항 신설).

타. 문화관광부장관은 당해 전통공예의 분야에서 20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특별한 전통공예를 전승하여 원형대로 실현할 수 있는 자인 경우 한국전통공예산업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인 또는 수인의 전통공예가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다만, 「문화재보호법」에 근거한 국가 및 시·도가 지정한 무형문화재의 기능보유자로 인정된 경우에는 한국전통공예산업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도록 규정함(안 제14조 신설).

파. 문화관광부장관은 전통공예의 전승·보전을 위하여 공예가로 하여금 그 기능에 대한 전수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전수교육을 받는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5조 신설).

하. 공예가 및 「문화재보호법」 규정에 따라 국가 및 시·도 무형문화재에 의하여 전수교육을 받고 이수증을 교부받은 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전시시연회·학술대회·국제박람회 등 전통공예 전시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6조 신설).

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전통공예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도록 규정함(안 제17조 신설).

너. 문화관광부장관은 전통공예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전통공예촌을 지정하고,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여 전통공예촌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신청하도록 하며, 지정된 전통공예촌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된 것으로 규정함(안 제21조 신설).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전통공예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 및 문화상품 개발·제작과 전문인력양성 등을 통하여 전통공예산업을 효율적으로 진흥하기 위하여 전통공예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전통공예산업단지의 조성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또는 지방산업단지의 지정·개발 절차에 따르도록 규정함(안 제24조 신설).

러. 전통공예산업의 진흥·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전통공예산업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재교육 지원, 전통공예문화의 보급 및 육성을 위한 홍보활동의 사업을 행하는 한국전통공예산업진흥센터를 두도록 규정함(안 제31조 신설).

며. 전통공예산업 진흥을 위하여 문화관광부장관 소속하에 한국전통공예산업진흥위원회를 두며,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함(안 제32조 및 제33조 신설).

버. 정부의 출연금 및 융자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전통공예산업진

흥기금을 설치하도록 규정함(안 제39조 신설).

## 전통공예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안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전통공예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전통공예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통공예산업"이라 함은 전통공예품의 기획·개발·제작·생산·유통·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행하는 산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한다.

가. 전승되어 내려오는 전통공예와 관련된 산업

나. 전통적인 고유기술 또는 기법으로 제조된 생활용품, 장식품 등의 공예품과 관련된 사업

다. 전통적인 고유기술 또는 기법을 근간으로 하여 현대에 새롭게 개발된 기술 또는 기법을 이용해 만들어진 생활용품, 장식품 등의 공예품과 관련된 산업

라.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업

2. "전통공예품"이라 함은 전통공예의 문화적 요소가 체화되어 경

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은 제품을 말한다.

3. "전통공예산업전문투자조합"(이하 "투자조합"이라 한다)이라 함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1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조합으로서 그 자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을 창업자 또는 제작자에게 투자하는 조합을 말한다.

4. "제작"이라 함은 특정목적을 위하여 유·무형의 전통공예품을 만드는 것을 말한다.

5. "제작자"라 함은 전통공예품을 제작하는 개인·법인·투자조합 등을 말다.

6. "유통"이라 함은 전통공예품이 제작자로부터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과정을 말한다.

7. "유통전문회사"라 함은 전통공예품의 원활한 유통과 물류비용의 절감을 위해 설립된 회사로서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신고한 회사를 말한다.

8. "전통공예촌"이라 함은 전통공예산업 관련 사업자와 그 지원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유치함으로써 전통공예산업 관련사업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시설물을 말한다.

9. "전통공예산업단지"라 함은 기업, 대학, 연구소, 개인 등이 공동으로 전통공예산업과 관련한 연구개발, 기술훈련, 정보교류, 공동제작 등을 할 수 있도록 조성한 토지·건물·시설의 집합체로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개발된 산업단지를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공예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의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공예산업 진흥을 위하여 기술의 개발과 조사·연구사업의 지원, 외국 및 전통공예산업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체제 구축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4조(중·장기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전통공예산업정책은 문화관광부장관이 총괄한다.

②문화관광부장관은 전통공예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중·장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통공예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의 중·장기 기본방향
2. 전통공예산업의 진흥을 위한 제도개선 및 법령개선사항
3. 전통공예산업의 분야별 육성시책에 관한 사항
4. 전통공예산업의 창업지원 등 전통공예사업자 육성에 관한 사항
5. 전통공예산업의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6. 전통공예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7. 전통공예가의 지정 및 기능전수에 관한 사항

8. 전통공예가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9. 전통공예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10. 전통공예품의 이용 촉진 및 유통활성화에 관한 사항
11. 전통공예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에 관한 사항
12. 전통공예 원재료 공급 및 원재료 연구 등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전통공예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문화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전통공예산업의 각 분야별 및 기간별로 세부시행계획(이하 “세부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⑤문화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세부시행계획의 수립과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연구소·법인·단체·대학·민간기업·개인 등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기본계획 및 세부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연차보고) 정부는 매년 전통공예산업 진흥에 관한 시책과 동향에 대한 보고서를 정기국회개시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전통공예산업 진흥 및 지원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2장 창업·제작·유통

제7조(창업의 지원) 문화관광부장관은 전통공예산업에 관한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투자회사에 대한 지원)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 또는 등록된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투자회사"라 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문화관광부장관으로부터 당해 회사의 전통공예산업에 대한 투자분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1. 전통공예산업 및 관련 제작자에 대한 투자
2. 전통공예품 제작자에 투자
3. 전통공예산업에 대한 투자자의 모집과 관리
4. 투자조합자금의 관리
5. 전통공예품 제작자를 위한 보증 및 자금의 알선
6. 전통공예산업에 관한 첨단기술과 설비, 전문인력 등의 알선 및 경영자문
7. 창업을 위한 상담 및 제작 활동의 지원
8. 전통공예품의 유통 촉진을 위한 국내외 마케팅 및 저작권 관리
9. 제1호 내지 제8호 사업에 부수되는 사업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전통공예산업에 대한 투자분의 인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투자조합자금의 관리는 특정 전통공

예품의 제작자에 대한 무담보조건부 대출을 포함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정을 받은 투자회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39조의 규정에 따른 전통공예산업진흥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⑤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는 투자회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투자조합) ①투자회사가 투자조합의 자금을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회사와 투자회사 외의 자가 출자하는 투자조합을 결성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업개요, 출자계획, 수익의 배분계획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투자회사의 전통공예산업에 대한 투자와 관련하여 투자조합의 범위 및 조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제작자의 제작지원) ①문화관광부장관은 전통공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수전통공예품의 제작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작자에게 소요자금을 융자하거나 그 밖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이 법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작의 범위 및 제작자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유통활성화) ①정부는 전통공예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전통공예품의 유통활성화 및 유통정보화 촉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유통정보화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

는 바에 따라 전통공예품에 국제표준바코드를 표시할 수 있다.

③국제표준바코드를 표시하여야 할 전통공예품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문화관광부장관은 전통공예품의 품질확보 및 유통촉진을 위하여 전통공예품에 관한 품질인증을 장려하고 이에 필요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⑤문화관광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전통공예품의 품질인증을 실시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⑥제4항의 규정에 따른 전통공예품의 품질인증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문화관광부장관은 전통공예품의 불법복제품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유통전문회사의 설립·지원) ①전통공예품의 유통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회사로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공동구매와 공동판매시설의 운영
2. 공동전산망의 운영(전자주문·재고 및 반품처리를 포함한다)
3. 공동물류창고의 설치·운영
4. 제1호 내지 제3호 사업에 부수되는 사업

②유통전문회사에 대한 설립·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전통공예품·우수전통공예품의 지정 등) ①문화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통공예품을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전통공예품의 지정은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한국전통공예산업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지정된 전통공예품은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통공예품 중 우수전통공예품을 지정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을 받은 당해 제품에 대하여는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우수전통공예품으로 지정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부착할 수 있다.

⑤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전통공예산업 진흥을 위한 법인 또는 단체로 하여금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⑥전통공예품의 지정기준 및 절차, 우수전통공예품의 지정·표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전통공예가의 인정 등) ①문화관광부장관은 전통공예의 계승·발전과 전통공예 기능인의 명예를 위하여 1인 또는 수인의 전통공예가(이하 “공예가”라 한다)를 인정할 수 있다.

②공예가는 당해 전통공예의 분야에서 20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특

별한 전통공예를 전승하여 원형대로 실현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한다.

③공예가의 인정은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한국전통공예산업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문화재보호법」에 근거한 국가 및 시·도가 지정한 무형문화재의 기능보유자로 인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이 법에 정한 사항 외에 공예가의 인정기준·인정방법·인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기능전수) ①문화관광부장관은 전통공예의 전승·보전을 위하여 공예기능자로 하여금 그 기능에 대한 전수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전수교육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국가가 부담할 수 있다.

③문화관광부장관은 전수교육을 받는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전수교육과 장학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공예가 등에 대한 지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예가 및 「문화재보호법」 규정에 따라 국가 및 시·도 무형문화재에 의하여 전수교육을 받고 이수증을 교부받은 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전통공예의 진흥을 위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

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시시연회·학술대회·국제박람회 등 전통공예 전시행사개최에 따른 사항
2. 전통공예품 전시판매장 또는 전시판매센터 건립에 따른 사항
3. 그 밖에 전통공예의 진흥과 관련된 사항

### 제3장 전통공예산업 기반조성

제17조(전문인력의 양성)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전통공예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소, 대학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을 전통공예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전통공예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양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제18조(기술개발의 촉진) ①문화관광부장관은 전통공예산업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 및 상품의 제작(이하 "기술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집행하고 그 업무를 수행함에 소요되

는 자금을 국고 및 제39조의 규정에 따른 전통공예산업진흥기금의 범위 안에서 지원 또는 출연할 수 있다.

②문화관광부장관은 기술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기관 및 단체 중에서 기술개발사업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전담할 수 있는 기관(이하 "기술개발사업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1.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한국전통공예산업진흥센터

2. 그 밖의 전통공예산업과 관련된 법인·기관 또는 단체

③기술개발사업전담기관은 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업무의 일부를 전통공예품 제작자나 기술개발자(이하 "기술개발사업실시기관"이라 한다)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술개발사업의 범위,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술개발사업전담기관에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개발사업실시기관의 선정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협동개발·연구의 촉진 등) ①정부는 전통공예품의 개발·연구를 위하여 인력, 시설, 기자재, 자금 및 정보 등의 공동 활용을 통한 협동개발과 연구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협동개발과 연구를 추진하는 자에 대하여 그 소요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지원) ①정부는 전통공예품의 수출경쟁력을 촉진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통공예 국제 박람회 및 전시회 개최, 방송·인터넷 등을 통한 해외마케팅·홍보활동, 외국인의 투자유치, 수출관련 협력체계의 구축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이를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21조(전통공예촌의 지정 등) ①문화관광부장관은 전통공예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전통공예촌을 지정하고, 자금 및 설비제공 등 지원에 필요한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전통공예촌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여 민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전통공예 관련 법인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전통공예촌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④전통공예촌의 지정요건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전통공예촌의 지정해제) 문화관광부장관은 전통공예촌이 지정요건에 미달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제23조(전통공예촌의 집적화 등) ①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전통공예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통공예산업단지 등에 전통공예촌을 집중적으로 입주하게 할 수 있으며 기존의 건축물을 전통공예촌으로 활용하게 하거나 그 건축물에 지원시설의 입주를 권장할 수 있다.

②정부는 민간인 등이 전통공예촌의 설치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4조(전통공예산업단지의 조성)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전통공예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 및 문화상품 개발·제작과 전문인력양성 등을 통하여 전통공예산업을 효율적으로 진흥하기 위하여 전통공예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전통공예산업단지의 조성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또는 지방산업단지의 지정·개발 절차에 따른다.

제25조(전통공예산업단지조성계획의 수립) ①문화관광부장관은 전통공예산업단지의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통공예산업단지조성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전통공예산업단지로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전통공예산업단지의 조성을 신청할 수 있다.

③전통공예산업단지조성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전통공예산업단지조성계획을 시행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6조(전통공예산업단지의 조성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전통공예산업단지의 조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27조(각종 부담금 등의 면제) ①전통공예산업단지 사업시행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부담금 등을 면제한다.

1. 「산지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2. 「농지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3. 「초지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②전통공예산업단지안의 전통공예산업진흥시설에 대하여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

제2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제2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전통공예

산업단지 지정권자로부터 사업시자로 지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하수도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시행의 허가
2.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
3. 「하천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른 하천점용 등의 허가
4. 「도로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5. 「항만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항만공사 시행의 허가
6.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사도개설의 허가
7. 「농지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의 규정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9. 「수도법」 제36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따른 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②전통공예산업단지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전통공예산업단지 지정권자는 미리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9조(국·공유재산의 대부·사용 등)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전통공예촌의 확충과 전통공예산업단지의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국·공유재산의 대부·사용·수익·매각 등의 내용 및 조건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0조(세제지원 등) ①정부는 전통공예산업진흥을 위하여 전통공예촌과 전통공예산업단지, 제작자·투자회사·투자조합이 전통공예산업에 투자하는 경우 및 창업자·창업을 지원하는 자에 대하여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지원을 할 수 있다.

②정부는 전통공예촌과 전통공예산업단지의 조성 및 운영에 직접 사용되는 장비, 설비 및 부품 등에 대하여는 「관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31조(한국전통공예산업진흥센터의 설립) ①전통공예산업의 진흥·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전통공예산업진흥센터(이하 "전통공예산업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전통공예산업센터는 법인으로 한다.

③전통공예산업센터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④전통공예산업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전통공예산업진흥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개발
2. 전통공예문화 조사·연구 등에 대한 지원
3. 전통공예산업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재교육 지원
4. 전통공예문화의 보급 및 육성을 위한 홍보활동
5. 온라인 홍보 및 판매 등 전통공예산업 진흥을 위한 종합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업
6. 전통공예의 계승 발전에 관한 사업
7. 전통공예의 응용기술 개발·지원에 관한 사업
8. 전통공예산업발전을 위한 유통활성화와 마케팅,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의 지원
9.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 및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국립박물관·공립박물관·국립미술관·공립미술관에서 구축한 데이터베이스 등 전통공예 자료에 대한 저작권·사용료 등 제반 권리의 위탁 관리
10. 전통공예의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저작권·사용료 등 제반 권리의 관리 및 관련 사업자 지원
11. 그 밖에 전통공예산업센터의 설립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

⑤전통공예산업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⑥전통공예산업센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4장 한국전통공예산업진흥위원회

제32조(한국전통공예산업진흥위원회의 설치) 전통공예산업 진흥을 위하여 문화관광부장관 소속하에 한국전통공예산업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3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문화관광부장관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위원은 전통공예산업에 관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중에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위촉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하여야 한다.

1. 문화관광부장관이 추천하는 인사 1인
2.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인사 2인
3. 전통공예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인사 2인
4. 전통공예 관련 학계 인사 2인
5. 국제 및 국제 전시 관련 인사 2인

6. 정보통신 분야 인사 1인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재정경제부 차관
2. 외교통상부 차관
3. 행정자치부 차관
4. 문화관광부 차관
5. 산업자원부 차관
6. 정보통신부 차관
7. 기획예산처 차관
8. 건설교통부 차관

⑤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34조(위원회의 직무 등)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전통공예산업정책방향의 설정 및 기본계획과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2. 전통공예산업정책의 조정 및 주요시책의 평가
3. 제39조의 규정에 따른 전통공예산업진흥기금의 조성과 운용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4. 전통공예산업 진흥을 위한 연구·조사
5. 전통공예산업정책의 개발과 자문

6. 전통공예품의 지정에 관한 사항

7. 전통공예산업 육성업무의 협력·조정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하거나 위원회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그 산하에 소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위원회의 예산은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위원의 대우) 위원회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직무수행경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6조(회의 등)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되어야 한다. 다만, 위원회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위원회는 내부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37조(사무보조 등) 위원회의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필요한 직원을 두며, 전통공예산업과 관련한 각종 연구와 조사, 전통공예산업정책의 개발과 자문 등을 위하여 그 산하에 연구·개발기

관 또는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38조(자료제출 협조 등) 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에 따른 직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소, 대학 및 그 밖의 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협조 또는 연구의 위탁을 할 수 있다

## 제5장 전통공예산업진흥기금

제39조(전통공예산업진흥기금의 설치) ①전통공예산업 진흥을 위하여 전통공예산업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및 융자금
2.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및 융자금
3. 국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4. 제41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단체 등의 전통공예산업 지원금
5. 문화관광부 소관의 다른 기금 등으로부터의 전입금
6.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7.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

③문화관광부장관은 기금의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통공예산업 진흥을 위한 융자재원 및 투자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관광부장관은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정부는 매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금에 대한 출연금 및 융자금의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40조(기금의 관리·운용) ①기금은 문화관광부장관이 관리·운용한다.

②문화관광부장관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공예산업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③기금의 조성방법·관리·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공공단체 등의 전통공예산업 지원금) ①문화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관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기금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공단체 등으로부터의 지원방법 및 지원규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우수전통공예품과 수출전략 전통공예품의 개발 및 제작 지원
2. 전통공예산업 관련기업의 창업 지원
3. 투자회사, 투자조합의 전통공예산업 관련 사업 지원
4. 제작자 등의 전통공예품 제작 지원
5. 유통전문회사의 설립·운영 지원

6. 국가 간 공동제작·합작투자 지원
7. 해외마케팅 및 수출지원
8. 전통공예산업 및 관련 사업자에 대한 지원
9. 전통공예 원재료 확보 및 연구를 위한 지원
10. 그 밖에 전통공예산업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제6장 보 칙

제43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 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자와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사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44조(권한의 위임·위탁) 문화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등에게 위임하거나 전통공예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45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허위로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정을 받은 자
2.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우수전통공예

품의 표시를 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기금관리기본법」 중 별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14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2. 전통공예산업진흥에 관한 법률